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16)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16)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2021. 9



2021. 9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16)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2021.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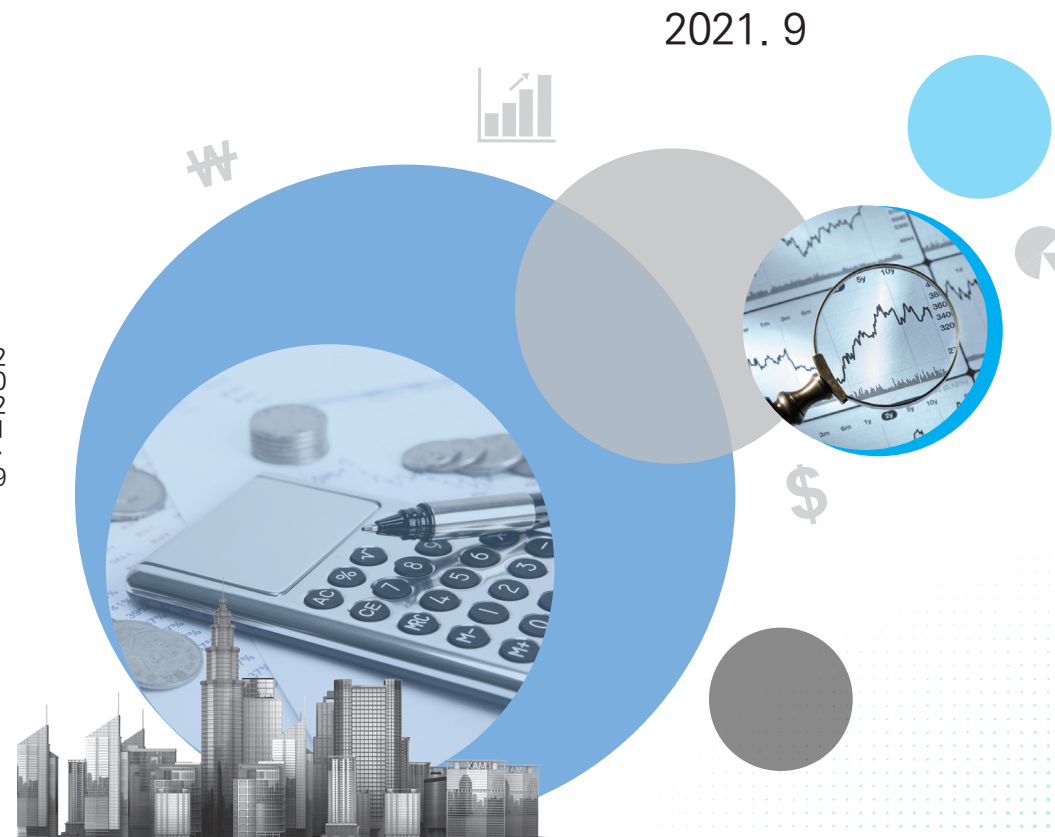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16)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16)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2021.9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16)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2021. 9

#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최승문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21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김 재 진



# 요 약

## 1. 연구개요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제도는 본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던 의료비 등 공제를 성실사업자에게도 허용하여 과표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함
  - 최근 성실사업자 요건이 완화되었으나, 성실사업자 인원 확대가 제한적이고 성실신고가 제고되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미미함
    - (2018년 개정세법) 간편장부 신고 포함, 수입금액 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 기준 90% → 50%, 계속사업 기간 3년 → 2년
  
- 본 연구에서는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함
  - 타당성 분석에서는 정부개입의 근거, 정책대상자의 적절성, 지원방식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
    - 세부담 형평성 제고와 성실신고 유도라는 제도 취지와 연관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
  - 효과성 분석에서는 동 제도가 수혜자에게 가져다 주는 세부담 절감효과와 납세자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동 제도가 사업자 부담을 절감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는지를 분석함
    - 이중차분법을 통해 성실사업자 요건 완화의 효과를 추정함

## 2. 제도 개요 및 현황

- 본 제도는 의료비 등 공제를 성실사업자에게 허용하여 근로자와 성실사업자 간

세부담 형평성, 성실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업자가 성실신고를 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

□ 본 제도의 정책대상자는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②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임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임

-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모두 가입 및 발급의무 준수 혹은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
-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
-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

○ 본 조에서 제시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음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 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할 것<sup>1)</sup>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으며, 직전 3개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된 소득금액의 10% 미만이고, 최근 3년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교부·수취 의무를 준수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 내용이 담긴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 본 제도의 정책대상자가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5%(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

---

1)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

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함<sup>2)</sup>

- 단 동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하며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동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sup>3)</sup>

□ 조세지출규모는 2009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조세지출규모는 399억원으로 전망됨

- 특히,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적용대상에 추가한 2012년부터 조세지출규모가 크게 증가함
  - 2011년 15억원 수준에서 2012년 288억원으로 증가함

<표 1> 연도별 조세지출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망)	2021 (전망)
의료비	6	1	2	35	32	310	305	320	313	326	411	397	399
교육비		10	13	253	237								
월세액 <sup>1)</sup>	N/A(2013년 8월 신설)					일몰종료							
<b>합계</b>	<b>6</b>	<b>11</b>	<b>15</b>	<b>288</b>	<b>269</b>	<b>310</b>	<b>305</b>	<b>320</b>	<b>313</b>	<b>326</b>	<b>411</b>	<b>397</b>	<b>399</b>

주: 1) 성실사업자의 월세지급액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제도는 2015년 12월 말 종료 후 2019년부터 재도입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신고 유형별 공제금액 및 공제인원을 살펴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20년 본 조로 인한 공제금액 및 공제인원의 97%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차지함
  - 이러한 수치는 자료가 이용 가능한 2017년 이후 큰 변화가 없음

2)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3)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의 20% 이상이거나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된 필요경비의 20% 이상인 경우

- 2019년에 조세지출규모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8년 본조의 지원요건 완화보다는 성실신고확인대상의 수입금액 기준 인하의 효과가 큰 것으로 보임<sup>4)</sup>

### 3. 타당성 분석

- 타당성 분석에서는 정부개입의 근거, 정책대상자의 설정, 지원방식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1977년 의료비 등 공제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당시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세원투명성이 낮은 사업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소득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제외의 근거가 소득탈루라면, 성실신고를 하는 사업자에 한해서는 동일한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이후 제도적, 기술적 진전에 따라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과약률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성실신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현금영수증 제도, 사업용계좌 제도, 성실신고확인제도 등이 개인사업자의 과세양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과세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자의 소득 은폐가 관측되고 있음
  - 무작위 세무조사 자료와 국세청 경정자료를 이용한 연구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택스 갭(tax gap)은 6조 7천억~8조원 수준(안종석·강성훈·오종현, 2017)
  - 성실사업자에게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여 성실신고자와 그렇지 않은 신고자 간 세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불성실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의료비 등 공제를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임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증빙서류에 대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세무전문가의 검증은 받았다는 점에서 성실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음

4) 수입금액 기준 변화에 대해서는 제Ⅲ장의 제2절을 참고

- 최근 준수실험적 방법론을 이용한 실증연구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대상 사업자의 납세준응도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권성오·이동규·전병욱, 2020; 권성오, 2021)
  -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것이 근로소득자 수준의 성실신고를 보장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예를 들어 성실신고확인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장기적으로 수입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성실신고 확인을 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권성오·이동규·전병욱, 2020)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하여 본 조의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세의 체납이나 조세범 처벌 사실,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였고 하여 성실사업자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초기에는 제도 정착을 위하여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나, 현재에는 그러한 필요성이 크지 않음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비 등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 현 제도의 적용요건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현행 제도에서는 동 제도에 적용되는 성실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① 성실신고를 위한 납세환경을 갖출 것과 더불어 ② 세무신고를 성실히 수행해 왔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① 사업용계좌, 카드가맹점 가입, 장부기장, 세금계산서 등 교부·수취
    - ② 국세체납, 조세범 처벌, 소득적출률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신고 금액이 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해야 한다는 요건은 사업자의 성실신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납세성실도와 관련 없는 외부적인 경영환경, 영업실적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다른 성실사업자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 인하여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의료비 등 공제를 받지 못함
- 적정 수입금액이 신고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실신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현행 제도의 다른 요건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카드가맹점 가입 등, 세금계산서 등 교부·수취 의무, 사업용계좌 사용
-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자의 수입금액 변화를 살펴보면, 수입금액 요건을 폐지한다고 해도 공제금액 및 공제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됨

#### 4. 효과성 분석

- 효과성 분석에서는 의료비 등 공제가 수혜자에게 가져다 주는 세부담 절감효과와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국세청에서 제공한 사업장별 납세 미시자료를 사용함
    - 2016~2019년 본 제도를 활용한 전체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 중 무작위로 추출된 사업장에 대한 사업수입, 필요경비, 종합소득, 신고 유형, 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공제금액 등의 정보를 이용
- 사업자는 의료비 등에 대한 공제에 대하여 그로부터 기대되는 절세액과 관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함
  - 사업자가 본 조에 의한 공제혜택 수준이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보다 작다고 판단하는 경우 요건 충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성실신고 유도효과도 발생하지 않게 됨
- 전체 산출세액 대비 동 제도로 인한 세액공제 규모를 계산하여 세액공제 규모가 사업자에게 의미 있는 수준인지 파악할 수 있음
  - 제도수혜자의 교육비, 의료비, 월세액 세액공제를 합한 금액의 평균값은 80만~90만원 수준이고, 평균 산출세액 대비 비중은 약 1.0% 수준임
  - 세액공제 규모를 감안하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과 그 외 성실사업자 요건 충족 여부는 각 요건과 관련된 다른 제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제도수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의료비 등 공제보다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해질 수 있는 가산세와 세무조사 등의 영향으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됨
- 현금영수증, 사업용계좌와 관련된 「소득세법」상 요건충족 여부도 각 제도와 관련된 업종 및 수입금액에 따른 의무부여와 제재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소규모 개인사업자인 간편장부대상 사업자의 경우 2018년 요건 완화로 인하여 간편장부 사용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비하여 전체 산출세액 대비 세액공제액 비중이 2배 이상 높아 경제적 유인에 반응할 가능성이 있음
- 2018년 요건 완화로 간편장부 이용자도 다른 요건 충족 시 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이를 활용하여 간편장부대상자를 처치군(treatment group), 복식부기의무자를 통제군(control group)으로 정의하고 제도 변화 전후 각 집단의 간편장부 사용 변화를 비교하는 이중차분법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분석 결과 간편장부대상자의 간편장부 사용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함
- 그러나 요건 완화가 신고소득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음
- 납세순응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활용되는 신고소득률은 사업자들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수입금액을 축소하여 보고하거나 필요경비를 확대하여 보고할 유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필요경비/수입금액)’과 같이 정의



# 목 차

I. 서론 .....	15
II. 제도 개요 및 현황 .....	21
1. 제도 개요 .....	21
가. 도입 의의 및 목적 .....	21
나. 정책대상자 .....	21
다. 수혜내용 .....	27
라. 조세지출규모 .....	28
2. 제도 연혁 .....	31
III. 타당성 분석 .....	33
1. 정부개입의 적절성 .....	35
2. 정책대상자의 적절성 .....	39
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40
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 .....	43
3. 지원방식의 적절성 .....	44
IV. 효과성 분석 .....	47
1. 분석자료 .....	49
2. 세부담 경감효과 .....	50
3. 제도요건 완화 전후 비교 .....	56
가. 전체 표본 대상 분석 .....	56
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제외한 분석 .....	61
4. 이중차분법 분석 .....	66

가. 간편장부 신고에 미친 영향 .....	66
나. 제도 이용과 신고소득률에 미친 영향 .....	71
<b>V. 결론 .....</b>	<b>79</b>
<b>참고문헌 .....</b>	<b>84</b>
<b>부 록 .....</b>	<b>85</b>
1. 제도 사용률에 미친 영향 .....	91
2. 신고소득률에 미친 영향 .....	93

## 표 목 차

<표 II-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	23
<표 II-2> 기장 의무와 추계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	26
<표 II-3> 연도별 조세지출규모 .....	28
<표 II-4> 신고 유형별 공제금액 변화 .....	29
<표 II-5>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공제금액 비중 변화 .....	30
<표 II-6> 신고 유형별 공제인원 변화 .....	30
<표 II-7>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공제인원 비중 변화 .....	30
<표 II-8>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제도 주요 연혁 .....	31
<표 III-1>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이용실적 .....	36
<표 III-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 현황 .....	37
<표 III-3> 수입금액 규모별 개인사업자 조사실적(2019년) .....	38
<표 III-4>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변천 .....	41
<표 III-5> 2019년 제도 미사용 사업장의 전년 3개년 평균 대비 수입금액 분포 .....	44
<표 IV-1> 공제제도 미활용 사업장 기초통계 .....	49
<표 IV-2> 공제제도 활용 사업장 기초통계 .....	50
<표 IV-3> 산출세액 대비 세액공제금액 비중 .....	51
<표 IV-4> 산출세액 대비 의료비 세액공제금액 비중 .....	51
<표 IV-5> 산출세액 대비 의료비 세액공제금액 비중(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 표본) ...	52
<표 IV-6> 산출세액 대비 교육비 세액공제금액 비중 .....	52
<표 IV-7> 산출세액 대비 교육비 세액공제금액 비중(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 표본) ...	53
<표 IV-8> 산출세액 대비 월세액 세액공제금액 비중 .....	53
<표 IV-9> 산출세액 대비 월세액 세액공제금액 비중(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 표본) ...	54
<표 IV-10>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산출세액 대비 세액공제금액 비중 ...	55
<표 IV-11> 신고 유형별 산출세액 대비 세액공제금액 비중 .....	55

<표 IV-12> 요건 완화 전후 제도 사용률 변화 1(전체 표본) .....	57
<표 IV-13> 요건 완화 전후 제도 사용률 변화 2(전체 표본) .....	57
<표 IV-14> 요건 완화 전후 제도 사용률 변화 3(전체 표본) .....	58
<표 IV-15> 요건 완화 전후 신고소득률 변화 1(전체 표본) .....	59
<표 IV-16> 요건 완화 전후 신고소득률 변화 2(전체 표본) .....	60
<표 IV-17> 요건 완화 전후 신고소득률 변화 3(전체 표본) .....	60
<표 IV-18>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 .....	61
<표 IV-19> 요건 완화 전후 제도 사용률 변화 1(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제외) .....	62
<표 IV-20> 요건 완화 전후 제도 사용률 변화 2(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제외) .....	63
<표 IV-21> 요건 완화 전후 제도 사용률 변화 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제외) .....	63
<표 IV-22> 요건 완화 전후 신고소득률 변화 1(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제외) .....	64
<표 IV-23> 요건 완화 전후 신고소득률 변화 2(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제외) .....	65
<표 IV-24> 요건 완화 전후 신고소득률 변화 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제외) .....	65
<표 IV-25> 2019년 표본 복식부기의무자 및 간편장부대상자 수 .....	67
<표 IV-26> 연도별 복식부기의무자의 신고 유형 .....	67
<표 IV-27> 연도별 간편장부대상자의 신고 유형 .....	67
<표 IV-28> 집단별 관측치 수 .....	68
<표 IV-29> 간편장부 사용률에 미친 영향(이중차분법, 통제집단: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	69
<표 IV-30> 간편장부 사용률에 미친 영향(이중차분법, 통제집단: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70
<표 IV-31> 간편장부 사용률에 미친 영향(이중차분법, 통제집단: 자기조정 신고자) .....	70
<표 IV-32> 간편장부 사용률에 미친 영향(이중차분법, 통제집단: 외부조정 신고자) .....	71
<표 IV-33> 2019년 신고 유형별 사업자 표본 수 .....	72
<표 IV-34> 집단별 관측치 수 및 제도 수혜 요건 여부 .....	73
<표 IV-35> 제도 사용률에 미치는 영향(이중차분법, 통제집단: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	74
<표 IV-36> 신고소득률에 미치는 영향(이중차분법, 통제집단: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	74
<표 IV-37> 제도 사용률에 미치는 영향(이중차분법, 통제집단: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75
<표 IV-38> 신고소득률에 미치는 영향(이중차분법, 통제집단: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76
<표 IV-39> 제도 사용률에 미치는 영향(이중차분법, 통제집단: 자기조정 및 외부조정 신고자) .....	76
<표 IV-40> 신고소득률에 미치는 영향(이중차분법, 통제집단: 자기조정 및 외부조정 신고자) .....	77

<부표 1> 성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	87
<부표 2> 성실신고 확인결과 사업자 확인사항 .....	88
<부표 3>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른 신고의무 .....	89
<부표 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 비중 .....	90
<부표 5> 제도 사용률에 미치는 영향(이중차분법, 통제집단: 자기조정 신고자) .....	92
<부표 6> 제도 사용률에 미치는 영향(이중차분법, 통제집단: 외부조정 신고자) .....	92
<부표 7> 신고소득률에 미치는 영향(이중차분법, 통제집단: 자기조정 신고자) .....	93
<부표 8> 신고소득률에 미치는 영향(이중차분법, 통제집단: 외부조정 신고자) .....	94

## 그림 목 차

[그림 Ⅲ-1]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이용실적 .....	37
[그림 Ⅲ-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 현황 .....	38
[부도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 비중 .....	90

# I. 서론





## I. 서론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제도는 본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던 의료비 등 공제를 성실사업자에게도 허용하여 과표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함
  - 최근 성실사업자 요건이 완화되었으나, 성실사업자 인원 확대가 제한적이고 성실신고가 제고되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미미함
    - (2018년 「개정세법」) 간편장부 신고 포함, 수입금액 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 기준 90% → 50%, 계속사업 기간 3년 → 2년
  
- 본 연구에서는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함
  - 타당성 분석에서는 정부개입의 근거, 정책대상자의 적절성, 지원방식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
    - 세부담 형평성 제고와 성실신고 유도라는 제도 취지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
  - 효과성 분석에서는 동 제도가 수혜자에게 가져다 주는 세부담 절감효과와 납세자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동 제도가 사업자 부담을 절감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는지를 분석함
    - 최근 성실사업자 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이중차분법을 통해 그 효과를 추정함
  
- 이어지는 제Ⅱ장에서는 동 제도의 개요, 변천과정 등을 살펴보고, 제Ⅲ장과 제Ⅳ장에서는 각각 타당성 분석과 효과성 분석을 수행하며, 제Ⅴ장에서는 연구내용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논의함



## Ⅱ. 제도 개요 및 현황





## II. 제도 개요 및 현황

### 1. 제도 개요

#### 가. 도입 의의 및 목적

- 본 제도는 본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의료비 등 공제를 성실사업자에게 허용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업소득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함
  - 1977년 의료비 등 공제제도가 도입될 때 사업소득자의 소득 은폐가 만연한 점을 고려하여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후 사업자의 과표양성화가 진행되면서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라고 인정되는 경우 공제를 허용하게 됨
  - 이를 통해 근로자와 성실사업자 간 세부담 형평성, 성실사업자와 불성실사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사업자가 성실신고를 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자 함

#### 나. 정책대상자

-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함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

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  
구내 고용활동: 5억원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  
인 내용이 담긴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sup>5)</sup>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sup>6)</sup>로서 본 조의 각 호에서 제시하  
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모두 가입 및 발급의무 준수 혹은 전  
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
- 장부<sup>7)</sup>를 비치·기록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
-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

- 본 조의 각 호에서 제시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음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  
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할 것<sup>8)</sup>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으며, 직전 3개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소 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이고, 최근 3년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교부·수취 의무를  
준수

□ 이하에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 요건의 내용과 관련  
된 제도에 대하여 기술함

5)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Ⅲ장 제2절 참고

6) 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

7) 간편장부 포함

8)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

## 1) 카드가맹점 가입 등 요건

□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모두 가입 및 발급의무 준수

-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르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다음과 같은 수입금액 기준 또는 업종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sup>9)</sup>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됨
- (수입금액 기준)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업종기준)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다음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 1.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所屬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 2.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附屬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 3.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표 II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구분	업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9) 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표 II -1>의 계속

구분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 주점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에 한정한다)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 학원, 예술 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그 밖의 업종	가전제품 소매업,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비만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실내건축 및 건축사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 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모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 소매업,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주: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밑줄 친 업종은 '21. 1. 1. 거래분부터 발급의무 시행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검색  
 일자: 2021. 8. 24.

- 또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하는 등의 경우
    - 1. 위와 동일
    -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 3. 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sup>10)</sup>

-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관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배분되는 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수출에 의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 6.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통해서만 매출 및 매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되는 사업자

## 2) 장부기장 요건

-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함
  - 본래 복식부기만 인정되었으나, 2018년부터 간편장부도 인정
-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영업활동에 대해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는데, 「소득세법」에서는 사업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음
  -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업 회계상의 결산서류인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합계잔액시산표 이외에 조정계산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함
  - 여러 사유로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경비율제도를 통해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음
    -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인정하고, 주요경비 이외의 비용은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일률적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 소규모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
-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은 다음과 같이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따름
  - 단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 또한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

10) 가.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통해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다. 가목 및 나목의 방식으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표 II -2>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 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6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옥탕업	1억 5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3,6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7,5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	2,400만원 이상	2,400만원 미만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검색 일자: 2021. 8. 24.

### 3) 사업용계좌 요건

-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
  - 2007년부터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거래<sup>11)</sup>를 개인용 거래와 분리하여 별도의 계좌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사업용계좌제도가 시행됨(김재진 외, 2008)

11)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를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 과세당국은 이를 통해 사업자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실물자료와 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사업용계좌제도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와 전문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sup>12)</sup>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함
  - 사업용계좌 미사용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하여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시 배제될 수 있음

#### 다. 수혜내용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성실사업자<sup>13)</sup>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 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의료비·교육비<sup>14)</sup>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sup>15)</sup>에서 공제함
  - 난임시술비<sup>16)</sup>의 경우에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 (월세액 세액공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가 월세액<sup>17)</sup>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함
  -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12)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13)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본 조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4)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과 제3항

15)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16)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3호

17) 「조특법」 제95조의2

- 의료비 등 세액공제금액과 월세세액공제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사업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단 의료비 등 세액공제 혹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다음과 같이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하며,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동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sup>18)</sup>된 수입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된 요경비의 20% 이상인 경우

## 라. 조세지출규모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항목의 과세연도별 감면액은 다음과 같음
  -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상 분류기준에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2016년 조세지출보고서부터는 「조특법」 제122조의3 항목으로 통합하여 조세지출규모를 제시

〈표 II -3〉 연도별 조세지출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망)	2021 (전망)
의료비	6	1	2	35	32	310	305	320	313	326	411	397	399
교육비		10	13	253	237								
월세액 <sup>1)</sup>	N/A(2013년 8월 신설)					일몰종료							
<b>합계</b>	<b>6</b>	<b>11</b>	<b>15</b>	<b>288</b>	<b>269</b>	<b>310</b>	<b>305</b>	<b>320</b>	<b>313</b>	<b>326</b>	<b>411</b>	<b>397</b>	<b>399</b>

주: 1) 성실사업자의 월세지급액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제도는 2015년 12월 말 종료 후 2019년부터 재도입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18) 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

- 2009년 이후 조세지출규모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조세지출규모는 399억 원으로 전망됨
  - 특히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를 적용대상에 추가한 2012년부터 조세지출규모가 크게 증가함
    - 2011년 15억원 수준에서 2012년 288억원으로 증가함
  
-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신고 유형별 공제금액 및 공제인원을 살펴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20년 본조로 인한 공제금액 및 공제인원의 97%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차지함
    - 이러한 수치는 자료가 이용 가능한 2017년 이후 큰 변화가 없음
  - 2019년에 조세지출규모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8년 본 조의 지원요건 완화보다는 성실신고확인대상의 수입금액 기준 인하의 효과가 큰 것으로 보임<sup>19)</sup>

<표 II -4> 신고 유형별 공제금액 변화

(단위: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의료비	성실신고확인	49.2	59.5	87.8	82.5
	복식부기	1.4	1.8	2.6	2.5
	간편장부	0.4	0.6	0.6	0.3
	추계	0.1	0.0	0.0	0.0
	기타	-	-	-	-
	소계	50.9	61.9	91.0	85.3
교육비	성실신고확인	254.8	257.6	310.0	302.8
	복식부기	5.8	5.7	8.7	8.0
	간편장부	0.6	0.6	0.7	0.4
	추계	0.1	0.0	0.0	0.0
	기타	-	-	-	-
	소계	261.2	264.0	319.5	311.1
월세액	성실신고확인	-	-	0.2	0.4
	복식부기	-	-	0.0	0.1
	간편장부	-	-	0.5	0.6
	추계	-	-	0.0	0.0
	기타	-	-	-	-
	소계	-	-	0.7	1.1
합계		312.2	325.9	411.2	397.5

주: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9) 수입금액 기준 변화에 대해서는 제Ⅲ장의 제2절을 참고

<표 II -5>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공제금액 비중 변화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성실신고확인	의료비	96.5	96.1	96.5	96.7
	교육비	97.5	97.6	97.0	97.3
	월세액	-	-	26.6	37.2
	합계	97.4	97.3	96.8	97.0

주: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I -6> 신고 유형별 공제인원 변화

(단위: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의료비	성실신고확인	7,174	8,756	13,679	12,854
	복식부기	188	242	374	367
	간편장부	143	166	182	134
	추계	15	10	4	2
	기타	-	-	-	-
	소계	7,520	9,174	14,239	13,357
교육비	성실신고확인	31,833	33,494	43,025	42,804
	복식부기	667	717	1,100	1,022
	간편장부	88	125	123	80
	추계	15	9	4	4
	기타	-	-	-	-
	소계	32,603	34,345	44,252	43,910
월세액	성실신고확인	-	-	38	73
	복식부기	-	-	7	17
	간편장부	-	-	92	111
	추계	-	-	0	0
	기타	-	-	-	-
	소계	-	-	137	201
합계		40,123	43,519	58,628	57,468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I -7>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공제인원 비중 변화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성실신고확인	의료비	95.4	95.4	96.1	96.2
	교육비	97.6	97.5	97.2	97.5
	월세액	-	-	27.7	36.3
	합계	97.2	97.1	96.8	97.0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 제도 연혁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항목은 2007년 12월 신설되었으며,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08년부터 성실사업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허용
  - 2011년 세법개정을 통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를 적용대상으로 추가
  - 2013년에는 성실사업자에 대한 월세액 공제를 허용
  - 2017년, 2018년 세법개정에서는 성실사업자 적용요건 완화 및 월세액 세액공제제도 재도입

<표 II -8>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제도 주요 연혁

연도	주요 변경사항
2007. 12. 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신설 - 적용시기: 2008. 1. 1. 이후 - 일몰기한: 2009. 12. 31.
2010. 1. 1.	○ ‘사업자 → 「소득세법」 제52조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 변경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수입금액 요건 완화 - 일몰기한: 2009. 12. 31. → 2010. 12. 31. - 수입금액 요건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완화함
2010. 12. 27.	○ 일몰기한 연장 - 일몰기한: 2010. 12. 31. → 2012. 12. 31.
2011. 5. 19.	○ 적용대상 추가 - ‘「소득세법」 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를 추가
2013. 1. 1.	○ 일몰기한 연장 - 일몰기한: 2012. 12. 31. → 2015. 12. 31.
2013. 8. 13.	○ 월세액 소득공제 추가 - 해당 과세기간의 총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에 대한 월세액의 5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 적용시기: 2013. 8. 13. 이후

<표 II -8>의 계속

연도	주요 변경사항
2014.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에 대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개인사업자 중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만 허용되고 있는 <b>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b>하고 <b>공제율은 15%</b>로 하였음</li> <li>- 적용시기: 2014. 1. 1. 이후</li> </ul>
2014. 12.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성실사업자의 월세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개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li> <li>- 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가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을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li> <li>- ④ 의료비 등 세액공제금액과 월세세액공제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사업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li> </ul> </li> </ul>
2015. 12.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실사업자에 대한 <b>의료비·교육비 공제 일몰기한 연장</b> 및 같은 조 제1항 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li> <li>- 일몰기한: 2015. 12. 31. → 2018. 12. 31.</li> <li>-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 수입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것</li> </ul>
2017. 12.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성실사업자 요건 완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편장부 신고 포함, 수입금액 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 기준 90% → 50%, 계속사업 기간 3년 → 2년</li> <li>- 적용시기: 2018. 1. 1. 이후</li> </ul> </li> <li>○ 성실사업자에게 적용되는 <b>난임시술비의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b></li> <li>- 적용시기: 2018. 1. 1. 이후</li> </ul>
2018. 12.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실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b>일몰기한 연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몰기한: 2018. 12. 31. → 2021. 12. 31.</li> </ul> </li> <li>○ <b>월세액 세액공제제도 재도입 및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사업자를 추가</b>(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12% 공제율 적용)</li> <li>- 일몰기한: 2021. 12. 31.</li> </ul>

자료: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txsi.hometax.go.kr/docs/main.jsp>, 검색일자: 2021. 8. 24.

### Ⅲ. 타당성 분석





### Ⅲ. 타당성 분석

#### 1. 정부개입의 적절성

- 1977년 의료비 등 공제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당시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세원투명성이 낮은 사업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소득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제외의 근거가 소득탈루라면, 성실신고를 하는 사업자에 한해서는 동일한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이후 제도적·기술적 진전에 따라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과액률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성실신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현금영수증 제도, 사업용계좌 제도, 성실신고확인제도 등이 개인사업자의 과세양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현금영수증 제도, 사업용계좌 제도,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의 과세양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정보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통보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기 어려움
    -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그 일부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제도<sup>20)</sup>
    - 현금영수증 제도는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휴대폰 번호 등을 제시하면 현금 거래 내역이 사업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통보되는 제도로, 2010년에는 업종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가 도입<sup>21)</sup>
    - 제도 도입 이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여, 2019년 기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이용실적 합계는 1,119조원 수준임
  - 또한 거래내역의 투명성 제고 및 기장 장려를 위하여 사업용계좌 제도, 간편장부제도 등이 도입

20) 2000년에는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가 도입

21)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 2007년 도입된 사업용계좌 제도는 사업용 거래를 개인용도의 거래와 분리하여 별도의 계좌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로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와 전문직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 간편장부는 복식부기와 달리 수입과 비용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단일 장부로 소규모 사업자의 장부기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입
- 2011년 신설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대규모 개인사업자로 하여금 종합소득세 신고 전 재무제표 감사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의 사전 검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부여함<sup>22)</sup>

〈표 III-1〉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이용실적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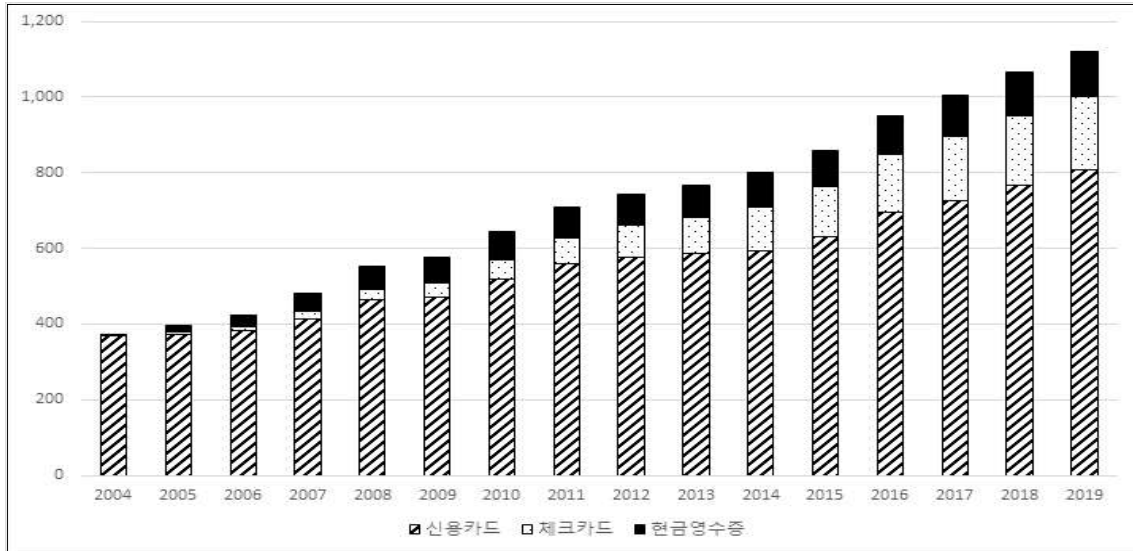
연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2004	368.0	2.6	0.0
2005	371.5	7.8	18.6
2006	382.3	12.3	30.6
2007	413.8	18.9	50.3
2008	464.2	26.8	61.6
2009	470.8	36.5	68.7
2010	517.4	51.8	76.0
2011	558.5	69.8	80.9
2012	577.7	84.8	82.4
2013	585.6	96.1	85.5
2014	594.1	113.8	91.9
2015	629.5	134.2	96.5
2016	694.0	155.1	101.3
2017	725.7	170.2	108.7
2018	767.8	183.1	116.5
2019	806.2	194.3	118.6

자료: 1.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의 「신용카드 이용실적」,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자료를 이용(검색일자: 2021. 8. 4.)  
 2. 체크카드는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지급수단별 통계」의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합을 이용(검색일자: 2021. 8. 4.)

22)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제III장의 제2절을 참고

[그림 III-1]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이용실적

(단위: 조원)



자료: 1.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의 「신용카드 이용실적」,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자료를 이용(검색일자: 2021. 8. 4.)  
 2. 체크카드는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지급수단별 통계」의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합을 이용(검색일자: 2021. 8. 4.)

<표 III-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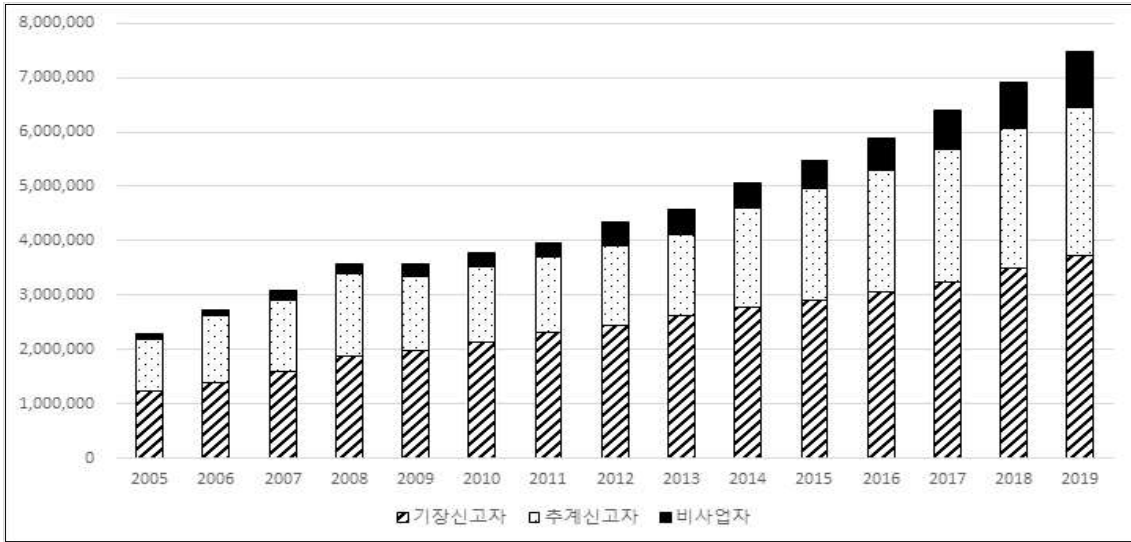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	확정신고 인원	기장신고자	추계신고자	비사업자
2005	2,279,497	1,230,024	965,662	83,811
2006	2,736,478	1,394,979	1,221,082	120,417
2007	3,074,419	1,585,023	1,315,235	174,161
2008	3,584,432	1,865,279	1,527,664	191,489
2009	3,570,816	1,983,143	1,353,158	234,515
2010	3,785,248	2,146,244	1,383,301	255,703
2011	3,956,702	2,308,387	1,394,215	254,100
2012	4,352,929	2,449,734	1,453,672	449,523
2013	4,564,682	2,621,353	1,484,154	459,175
2014	5,052,552	2,773,327	1,815,652	463,573
2015	5,482,678	2,917,267	2,047,981	517,430
2016	5,874,671	3,064,695	2,231,578	578,398
2017	6,393,891	3,247,709	2,442,139	704,043
2018	6,911,088	3,488,783	2,577,611	844,694
2019	7,469,635	3,727,436	2,733,330	1,008,869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3-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 현황', 각 연도

[그림 III-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 현황

(단위: 명)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3-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 현황’, 각 연도

- 과세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자의 소득 은폐가 관측되고 있음
  - 국세통계연보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귀속 기준 4,662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결정소득금액 대비 신고소득금액은 65% 수준임
    - 무작위 세무조사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전체의 납세순응도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무작위 세무조사 자료와 국세청 경정자료를 이용한 연구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택스 갭(tax gap)은 6조 7천억~8조원 수준(안종석·강성훈·오종현, 2017)

<표 III-3> 수입금액 규모별 개인사업자 조사실적(2019년)

(단위: 명, %, 백만원)

구분	결정조사 인원	신고소득금액	결정소득금액	비율 (=신고소득/결정소득)
1억원 이하	235	9,123	13,945	65.4
5억원 이하	691	54,272	133,272	40.7
10억원 이하	818	121,297	247,819	48.9
50억원 이하	2,264	857,159	1,272,300	67.4
50억원 초과	654	948,604	1,415,497	67.0
합계	4,662	1,990,455	3,082,833	64.6

자료: 국세청, 『2020 국세통계연보』, ‘13-1. 개인사업자 조사 실적’, 2020.

- 이상의 통계를 고려하면 성실사업자에게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여 성실신고자와 그렇지 않은 신고자 간 세부담 형평성을 높이고, 불성실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의료비 등 공제를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임
- 요약하면,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던 의료비 등 공제를 허용함으로써 근로소득자와 성실사업자 간 세부담 형평성과 성실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 간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 긍정적인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음

## 2. 정책대상자의 적절성

- 근로소득자와 유사한 과표양성화 수준을 보이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와 동일하게 의료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그 효용에 비해 과도한 납세행정비용을 유발하여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기 어려움
  - 반대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평균적인 과표양성화 차이만을 근거로 특정 사업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사전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음
    - 주요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유사제도 운영 시 근로소득자와 사업자를 차별하지 않고 있음(안종석·오종현, 2017)<sup>23)</sup>
  - 앞서 언급한 대로 그동안 제도적·기술적 발달에 따라 사업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이를 활용하여 성실신고를 위한 기본적인 여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는 동 조를 적용할 수 있음

23)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항목별공제와 표준공제 중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항목별공제로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 적용 시 납세자의 소득의 종류에 따라 차별을 두고 있지 않음. 일본 역시 의료비는 거주자를 대상으로(「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교육비는 자기의 근로에 기초하여 얻은 사업소득, 급여소득, 퇴직소득 또는 잡소득을 대상으로 공제하고 있음(「소득세법」 제2조 제1항 제32호)

## 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만으로 의료비 등 공제의 정책대상이 됨
  
-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따르면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대리인(이하 성실신고확인자)<sup>24)</sup>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해야 함
  -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재무제표 감사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의 사전 검증을 통해 대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준용도를 높이고자 함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성실신고확인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는 표지와 구체적인 성실신고확인 내용이 담긴 첨부서류로 구성
    - 성실신고확인자는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에 주요 사업내역 현황, 수입금액 검토,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 여부 등의 내용을 작성하고, ‘성실신고확인 결과 특이사항 기술서’에는 성실신고확인 과정에서 나타난 특이사항을 서술함<sup>25)</sup>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 결과 사업자 확인사항’의 각 항목에 대하여 ‘예/아니오’로 확인하여 서명함<sup>26)</sup>
  -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 및 제재 정책이 있는데, 의료비 등 공제제도도 이러한 제도의 하나로 볼 수 있음
    - 그 외 지원제도로는 신고·납부기한 1개월 연장, 성실신고확인에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가 있음<sup>27)</sup>
    - 제재수단으로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수시 세무조사 대상 선정,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가 있음

24)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3항

25) <부표 1> 참고

26) <부표 2> 참고

27)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증빙서류에 대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세무전문가의 검증을 받았다는 점에서 성실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음
  - 최근 준수실험적 방법론을 이용한 실증연구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대상 사업자의 납세준응도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권성오·이동규·전병욱(2020)에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수입금액 기준이 변화한 것을 이용하는 이중차분법을 통해 정책대상자의 신고소득률이 증가함을 보임
    - 제도 도입시점과 두 번의 개정시점 전후 신규 대상자와 통제집단의 행태변화를 비교분석한 결과,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하여 정책대상자의 신고소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제도 도입으로 인한 효과가 크게 나타남
    - 이때 신고소득률이란 사업자들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수입금액을 축소하여 보고하거나 필요경비를 확대하여 보고할 유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필요경비/수입금액)’과 같이 정의함
  - 권성오(2021)에서는 집군추정법(bunching estimation)을 이용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개인사업자의 납세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 분포가 성실신고확인제도 업종별 총수입금액 기준 좌측에 몰려 있는 현상이 관측됨<sup>28)</sup>

<표 III-4>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변천

(단위: 억원)

업종	연간 수입금액(매출)		
	2011~2013 <sup>1)</sup> 귀속	2014~2017 <sup>2)</sup> 귀속	2018~2019 <sup>3)</sup> 귀속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 등	30	20	15
제조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출판방송업, 금융보험, 상품중개 등	15	10	7.5
부동산임대, 교육서비스, 보건, 사회복지, 예술스포츠, 기타개인서비스업 등	7.5	5	5

주: 1) 「소득세법」령 제133조 제1항 2011. 6. 3. 신설

2) 「소득세법」령 제133조 제1항 2013. 6. 11. 개정

3) 「소득세법」령 제133조 제1항 2018. 2. 13. 개정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검색일자: 2021. 8. 24.

28) 특히 수입금액 기준이 바뀌면 집군의 위치도 그에 상응하여 이동함

- 즉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는 것을 회피하려는 행태가 나타나는데, 이는 해당 제도가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줌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것이 근로소득자 수준의 성실신고를 보장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예를 들어 성실신고확인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장기적으로 수입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성실신고확인을 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권성오·이동규·전병욱, 2020)
  - 관련된 통계가 부재하여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판단할 수 없음
- 이러한 행태가 나타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밝혀지는 경우 허위 확인금액의 크기에 따라 직무정지 및 과태료 등의 징계가 가해질 수 있음(권성오, 2021)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sup>29)</sup>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전액 추징하고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동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하여 본 조의 제1항 제4호의 요건<sup>30)</sup>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세의 체납이나 조세범 처벌 사실,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성실사업자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초기에는 제도 정착을 위하여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나, 현재에는 그러한 필요성이 크지 않음

29)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30)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으며, 직전 3개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소 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이고, 최근 3년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교부·수취 의무를 준수

## 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비 등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 현 제도의 적용요건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현행 제도에서는 동 제도에 적용되는 성실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① 성실신고를 위한 납세환경을 갖춘 것과 더불어 ② 세무신고를 성실히 수행해 왔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① 사업용계좌, 카드가맹점 가입, 장부기장, 세금계산서 등 교부·수취
    - ② 국세체납, 조세범 처벌, 소득적출물
  
- 수입금액 요건과 계속사업 요건은 일정 수준 이상의 신고실적이 있는 사업자를 제도대상으로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러한 요건들이 성실신고 및 납세순응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다만 2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의 경우 성실신고 이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관찰기간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자의 납세성실도와 관련 없는 외부적인 경영환경, 영업실적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다른 성실사업자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의료비 등 공제를 받지 못함
  - 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해야 한다는 요건은 급격한 매출 감소가 수입금액 누락과 연관되어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적정 수입금액이 신고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실신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다른 성실사업자 요건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비사업자와의 거래의 경우 카드가맹점 가입 등의 요건 충족 여부로, 사업자와의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 교부·수취의무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할 수 있으며, 또한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사업용계좌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할 수 있음

-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2019년 수입금액이 2016~2018년 기간 평균 대비 얼마나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면, 본 조로 공제를 받지 않은 사업장의 90% 이상이 수입금액 기준은 만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즉 3개년 평균 수입금액 요건을 폐지한다고 해도 공제금액 및 공제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sup>31)</sup>

<표 III-5> 2019년 제도 미사용 사업장의 전년 3개년 평균 대비 수입금액 분포

(단위: 개, %)

구분	사업장 수	비율	누적비율
10% 미만	614	1.5	1.5
10% 이상 20% 미만	494	1.2	2.6
20% 이상 30% 미만	650	1.5	4.2
30% 이상 40% 미만	766	1.8	6.0
40% 이상 50% 미만	1,067	2.5	8.5
50% 이상 60% 미만	1,442	3.4	11.9
60% 이상 70% 미만	2,112	5.0	17.0
70% 이상 80% 미만	3,019	7.2	24.1
80% 이상 90% 미만	4,422	10.5	34.6
90% 이상 100% 미만	6,104	14.5	49.1
100% 이상	21,449	50.9	100
총계	42,139	100	100

자료: 국세청 제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3. 지원방식의 적절성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는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5%<sup>32)</sup>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액을 제출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sup>33)</sup>

31) 사업용계좌 사용 등 다른 요건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함

32) 난임시술비의 경우 20%

33)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를 공제하며,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성실사업자로 판단되는 경우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에 대하여 근로자와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공제 수준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는 성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일정 기간 동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타당함<sup>34)</sup>
- 한편 신고소득률을 기준으로 성실신고자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집단 간 형평성과 행정비용 등의 문제로 인하여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기는 어려움
- 신고소득률은 ‘1-(필요경비/수입금액)’으로 정의
    -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수입금액을 축소하거나 필요경비를 확대하여 신고할 유인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신고소득률은 낮아지게 됨<sup>35)</sup>
  - 업종과 수입금액이 유사한 사업자들의 신고소득률을 비교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신고소득률을 보이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본 조를 적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상대적인 신고소득률에 근거하여 성실사업자를 판단한다면 이미 과표양성화가 진행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 또한 본 조를 위하여 집단별 신고소득률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그 효익에 비해 과도한 행정비용을 유발할 수 있음

34) 본 조 제5항

35) 신고소득과 실제소득 사이의 비율을 이용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실제소득은 파악하기 어려움



## IV. 효과성 분석





## IV. 효과성 분석

### 1. 분석자료

- 본 연구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한 사업장별 납세 미시자료를 사 용함
  - 2016~2019년 본 제도를 활용한 전체 사업장에 대한 사업수입, 사업필요경비, 종합소득, 신고 유형, 의료비·교육비·월세액 공제금액 등의 정보가 존재
  - 2016~2019년 본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사업장 중 무작위로 추출된 사업장에 대한 연도별 사업수입, 사업필요경비, 종합소득, 신고 유형 등의 정보가 존재
    - 같은 귀속연도에 동일한 개인에 대하여 다수의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는 변수별 평균치를 사용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취급하였음

〈표 IV-1〉 공제제도 미활용 사업장 기초통계

(단위: 개, 억원)

연도	통계	사업수입	사업필요경비	종합소득금액
2016년	표본 수	43,216	43,216	43,216
	평균	2.5	2.2	0.4
	표준편차	13.1	12.5	2.5
2017년	표본 수	43,683	43,683	43,683
	평균	2.5	2.2	0.4
	표준편차	13.2	12.4	2.3
2018년	표본 수	44,040	44,040	44,040
	평균	2.5	2.2	0.5
	표준편차	14.3	13.4	2.9
2019년	표본 수	46,237	46,237	46,237
	평균	2.6	2.2	0.5
	표준편차	30.0	25.0	7.2

자료: 국세청 제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V-2> 공제제도 활용 사업장 기초통계

(단위: 개, 억원)

연도	통계	사업수입	사업필요경비	종합소득금액
2016년	표본 수	46,929	46,929	46,929
	평균	20	17	3
	표준편차	29	28	8
2017년	표본 수	49,765	49,765	49,765
	평균	20	18	3
	표준편차	32	29	5
2018년	표본 수	65,334	65,334	65,334
	평균	18	16	2
	표준편차	26	24	4
2019년	표본 수	64,697	64,697	64,697
	평균	18	15	3
	표준편차	26	24	4

자료: 국세청 제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본 장에서는 동 제도가 수혜자에게 가져다 주는 세부담 절감효과와 납세자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제2절에서는 본 조에 의한 세액공제의 세부담 경감효과를 분석함
  - 제3절과 제4절에서는 2018년 제도요건 완화가 제도 사용률 및 신고소득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

## 2. 세부담 경감효과

- 사업자는 의료비 등에 대한 공제에 대하여 그로부터 기대되는 절세액과 관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의사 결정을 함
  - 사업자가 본 조에 의한 공제혜택 수준이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보다 작다고 판단하는 경우 요건 충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성실신고 유도효과도 발생하지 않게 됨
  - 각 사업자가 본 조의 수혜자가 되기 위하여 지불해야하는 비용을 추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본 조로 인한 혜택의 크기는 기초통계를 통해 간단히 살펴볼 수 있음

- 이에 본 절에서는 본 제도로 인해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의 산출세액 대비 세액공제 규모를 계산하여 세액공제 규모가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인지 분석함
  - <표 IV-3>은 연도별 전체 세액공제액, 즉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합한 금액의 평균값과 이 값의 평균 산출세액 대비 비중을 보여줌
    - 본 제도로 인한 총세액공제 평균금액은 80만~90만원 수준
    - 평균 세액공제액의 평균 산출세액 대비 비중은 약 1.0% 수준

<표 IV-3> 산출세액 대비 세액공제금액 비중

(단위: 개, %)

연도	관측치	평균 세액공제액 (A)	평균 산출세액 (B)	산출세액 대비 세액공제액 비중(A/B)
2016년	53,032	886,779	86,697,574	1.0
2017년	56,748	885,916	88,367,670	1.0
2018년	74,220	835,873	74,985,808	1.1
2019년	73,897	815,703	79,536,156	1.0

자료: 국세청 제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다음의 분석에서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별도의 통계를 보여줌
  - 우선 <표 IV-4>는 본 제도를 이용한 전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평균 의료비 세액공제액 및 평균 산출세액 대비 비중을 보여줌
    - 평균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15만~20만원 수준
    - 평균 의료비 세액공제액의 평균 산출세액 대비 비중은 약 0.2~0.3% 수준

<표 IV-4> 산출세액 대비 의료비 세액공제금액 비중

(단위: 개, %)

연도	관측치	평균 의료비 세액공제액(A)	평균 산출세액(B)	산출세액 대비 세액공제액 비중(A/B)
2016년	53,032	147,794	86,697,574	0.2
2017년	56,748	180,529	88,367,670	0.2
2018년	74,220	195,690	74,985,808	0.3
2019년	73,897	184,797	79,536,156	0.2

자료: 국세청 제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표 IV-4>에서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교육비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까지 모두 포함한 통계이기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통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표 IV-5>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균 의료비 세액공제액과 평균 산출세액 대비 비중을 보여줌
- 평균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70만원 수준
- 전체 산출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1.9% 수준

<표 IV-5> 산출세액 대비 의료비 세액공제금액 비중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 표본)

(단위: 개, %)

연도	관측치	평균 의료비 세액공제액(A)	평균 산출세액(B)	산출세액 대비 세액공제액 비중(A/B)
2016년	11,185	700,742	46,867,148	1.5
2017년	13,710	747,239	50,102,849	1.5
2018년	20,829	697,303	40,726,334	1.7
2019년	19,879	686,954	35,316,590	1.9

자료: 국세청 제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다음의 분석에서는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한 별도의 통계를 보여줌
  - 우선 <표 IV-6>은 본 제도를 이용한 전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평균 교육비 세액공제액 및 평균 산출세액 대비 비중을 보여줌
  - 평균 교육비 세액공제액은 60만~70만원 수준
  - 평균 교육비 세액공제액의 평균 산출세액 대비 비중은 약 0.8~0.9% 수준

<표 IV-6> 산출세액 대비 교육비 세액공제금액 비중

(단위: 개, %)

연도	관측치	평균 교육비 세액공제액(A)	평균 산출세액(B)	산출세액 대비 세액공제액 비중(A/B)
2016년	53,032	738,985	86,697,574	0.9
2017년	56,748	705,387	88,367,670	0.8
2018년	74,220	638,928	74,985,808	0.9
2019년	73,897	628,774	79,536,156	0.8

자료: 국세청 제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표 IV-6>에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의료비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까지 모두 포함한 통계이기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통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표 IV-7>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균 교육비 세액공제액과 평균 산출세액 대비 비중을 보여줌
- 평균 교육비 세액공제액은 70만~80만원 수준
- 전체 산출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0.9% 수준

<표 IV-7> 산출세액 대비 교육비 세액공제금액 비중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 표본)

(단위: 개, %)

연도	관측치	평균 교육비 세액공제액(A)	평균 산출세액(B)	산출세액 대비 세액공제액 비중(A/B)
2016년	47,401	826,773	90,496,062	0.9
2017년	49,989	800,762	92,242,899	0.9
2018년	63,429	747,627	79,758,951	0.9
2019년	63,567	730,954	86,355,220	0.8

자료: 국세청 제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다음의 분석에서는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한 별도의 통계를 보여줌
  - 우선 <표 IV-8>은 본 제도를 이용한 전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평균 월세액 세액공제액 및 평균 산출세액 대비 비중을 보여줌
  - 평균 월세액 세액공제액은 2018년과 2019년 약 1천~2천원 수준으로 미미함
  - 평균 월세액 세액공제액의 평균 산출세액 대비 비중은 아주 미미한 수준

<표 IV-8> 산출세액 대비 월세액 세액공제금액 비중

(단위: 개, %)

연도	관측치	평균 월세액 세액공제액(A)	평균 산출세액(B)	산출세액 대비 세액공제액 비중(A/B)
2016년	53,032	0	86,697,574	0
2017년	56,748	0	88,367,670	0
2018년	74,220	1,255	74,985,808	0.002
2019년	73,897	2,132	79,536,156	0.003

자료: 국세청 제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표 IV-8>에서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의료비 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까지 모두 포함한 통계이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통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표 IV-9>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평균 월세액 세액공제액과 평균 산출세액 대비 비중을 보여줌
  - 2018년과 2019년 평균 월세액 세액공제액은 50만~60만원 수준
  - 월세액 세액공제를 사용한 사업자가 2018년과 2019년 각각 182명과 278명으로 많지 않으며, 이들의 평균 산출세액은 약 250만원 수준
  - 월세액 세액공제액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의 평균 산출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으로 상당한데, 이는 월세액 세액공제가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

<표 IV-9> 산출세액 대비 월세액 세액공제금액 비중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 표본)

(단위: 명, %)

연도	관측치	평균 월세액 세액공제액(A)	평균 산출세액(B)	산출세액 대비 세액공제액 비중(A/B)
2016년	0	-	-	-
2017년	0	-	-	-
2018년	182	511,959	2,514,905	20.4
2019년	278	566,643	2,588,394	21.9

자료: 국세청 제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누어 살펴보면, 사업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간편장부대상자의 산출세액 대비 세액공제금액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복식부기의무자의 산출세액 대비 세액공제금액 비중은 앞서 살펴본 전체 표본을 이용한 값과 큰 차이가 없는데, 이는 본 세액공제를 이용하는 사업자 중 다수가 복식부기의무자이기 때문임
  - 간편장부대상자의 평균 산출세액 대비 세액공제금액 비중은 연도에 따라 2.0~2.4% 수준임

<표 IV-10>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산출세액 대비 세액공제금액 비중

(단위: 개, %)

구분	연도	관측치	평균 세액공제액 (A)	평균 산출세액 (B)	산출세액 대비 세액공제액 비중 (A/B)
복식부기 의무자	2016년	52,151	890,600	87,608,904	1.0
	2017년	55,876	890,665	89,363,536	1.0
	2018년	72,808	839,825	75,902,448	1.1
	2019년	72,601	819,938	80,493,478	1.0
간편장부 대상자	2016년	881	660,625	32,751,195	2.0
	2017년	872	581,609	24,554,588	2.4
	2018년	1,412	632,116	27,720,452	2.3
	2019년	1,296	578,484	25,907,684	2.2

자료: 국세청 제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사업자의 신고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 산출세액 대비 세액공제액의 비중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제도 이용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의 경우 전체 평균과 비슷한 값을 보임

<표 IV-11> 신고 유형별 산출세액 대비 세액공제금액 비중

(단위: 개, %)

구분	연도	관측치	평균 세액공제액 (A)	평균 산출세액 (B)	산출세액 대비 세액공제액 비중 (A/B)
성실신고확인	2016년	51,857	886,560	88,306,340	1.0
	2017년	55,462	886,736	90,039,743	1.0
	2018년	72,310	835,541	76,494,080	1.1
	2019년	72,121	815,186	81,120,513	1.0
복식부기	2016년	915	1,004,639	19,434,095	5.2
	2017년	997	926,481	20,472,813	4.5
	2018년	1,552	897,463	21,570,807	4.2
	2019년	1,473	894,153	17,926,728	5.0
간편장부	2016년	224	527,813	2,076,375	25.4
	2017년	262	622,552	1,784,360	34.9
	2018년	350	644,900	1,769,470	36.4
	2019년	297	564,028	1,461,124	38.6
추계	2016년	36	441,255	5,460,468	8.1
	2017년	27	258,953	941,512	27.5
	2018년	8	247,171	7,816,595	3.2
	2019년	6	237,243	25,138,588	0.9

자료: 국세청 제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자기조정 및 외부조정 신고자의 경우 산출세액 대비 세액공제액 비중이 연도에 따라 4~5% 수준임
-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 산출세액 대비 세액공제액 비중이 25~39% 수준임
  - 추계사업자의 경우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수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3. 제도요건 완화 전후 비교

#### 가. 전체 표본 대상 분석

- 우선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패널 회귀분석을 통해 2018년 제도 적용 요건 완화 전후 제도 사용률의 변화를 살펴봄
  - 2018년부터 제도 적용 요건이 완화되어 기존 복식부기 신고자에서 간편장부 신고자로 확대되었으며, 수입금액도 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의 9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되었고, 계속사업연도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되었음
  - 따라서 이하의 분석에서는 2018년 전(즉 2016년과 2017년)에 비해 2018년 이후(즉 2018년과 2019년) 제도 사용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함
    - 종속변수는 제도 사용 여부, 즉 공제금액이 있는지 여부이며 제도를 사용하였을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의 값을 가짐
    - ‘2018년 이후’ 변수는 2016년과 2017년에 해당되는 관측치에는 0, 2018년과 2019년에 해당되는 관측치에는 1을 부여
    - 또한 사업장의 규모를 통제하기 위해 사업수입 또는 종합소득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통제변수로 사용함
  - <표 IV-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 이전 대비 2018년 이후 공제 사용률이 0.08%p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IV-12> 요건 완화 전후 제도 사용률 변화 1(전체 표본)

구분	(1)	(2)	(3)	(4)
2018년 이후	-0.000809*** (8.57e-05)	-0.000808*** (8.57e-05)	-0.000804*** (8.57e-05)	-0.000805*** (8.57e-05)
log(사업수입)		0.000616*** (5.88e-05)		0.000426*** (6.18e-05)
log(종합소득)			0.000362*** (2.84e-05)	0.000298*** (2.99e-05)
상수	0.561*** (5.94e-05)	0.549*** (0.00116)	0.555*** (0.000506)	0.547*** (0.00117)
N	404,439	404,437	404,439	404,437
R-squared	0.0042	0.4062	0.2243	0.4226

주: \*\*\*, \*\*, \*는 통계적으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  
 자료: 국세청 제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각 연도별 변수를 따로 포함하여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음
- <표 IV-13>에서 연도별 계수는 분석에서 생략한 2016년 대비 효과의 크기임
- 2016년 대비 2017년부터 제도 사용률이 하락한 것으로 보여 앞선 분석에서 발견한 2018년 이후 사용률 감소는 제도 변화와 무관한 결과일 수 있음

<표 IV-13> 요건 완화 전후 제도 사용률 변화 2(전체 표본)

구분	(1)	(2)	(3)	(4)
2017년	-0.000192 (0.000119)	-0.000200* (0.000119)	-0.000206* (0.000119)	-0.000209* (0.000119)
2018년	-0.000206* (0.000119)	-0.000216* (0.000119)	-0.000217* (0.000119)	-0.000222* (0.000119)
2019년	-0.00168*** (0.000121)	-0.00168*** (0.000121)	-0.00168*** (0.000121)	-0.00168*** (0.000121)
로그(사업수입)		0.000609*** (5.87e-05)		0.000421*** (6.17e-05)
로그(종합소득)			0.000358*** (2.84e-05)	0.000295*** (2.99e-05)
상수	0.561*** (8.60e-05)	0.549*** (0.00116)	0.555*** (0.000509)	0.548*** (0.00117)
N	404,439	404,437	404,439	404,437
R-squared	0.0011	0.3439	0.1753	0.3731

주: \*\*\*, \*\*, \*는 통계적으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  
 자료: 국세청 제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제도 변화 직전 연도와 직후 연도인 2017년과 2018년을 비교하기 위해 <표 IV-14>는 두 연도만 포함한 분석의 결과를 보여줌
- 분석 결과 2017년 대비 2018년 제도 사용률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14> 요건 완화 전후 제도 사용률 변화 3(전체 표본)

구분	(1)	(2)	(3)	(4)
2018년	0.000132	0.000125	0.000131	0.000126
	(0.000120)	(0.000120)	(0.000120)	(0.000120)
로그(사업수입)		0.000675***		0.000505***
		(0.000120)		(0.000125)
로그(종합소득)			0.000333***	0.000265***
			(5.49e-05)	(5.75e-05)
상수	0.566***	0.553***	0.561***	0.552***
	(8.26e-05)	(0.00236)	(0.000976)	(0.00238)
N	203,144	203,143	203,144	203,143
R-squared	0.0042	0.4730	0.2894	0.4877

주: \*\*\*, \*\*, \*는 통계적으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  
 자료: 국세청 제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다음으로 2018년 제도 적용 요건 완화 전후 신고소득률의 변화를 살펴봄
  - 정부에서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입 및 비용을 사실대로 보고하고 탈세를 줄이기 위함
  - 사업자들은 수입을 사실보다 적게 보고하거나 비용을 사실보다 많게 늘려 세금을 줄이려는 동기가 존재함
  - 선행연구에서는 성실신고 행태를 보여주는 대리변수로 신고소득률을 활용
    - 신고소득률은 사업수입 중 필요경비를 제외한 신고소득의 비율로 정의함
    -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업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필요경비를 과대 신고할 경우 신고소득률은 낮아짐
    - 구체적으로 신고소득률은  $1 - \frac{\text{사업필요경비}}{\text{사업수입}}$  로 구함
    - 신고소득 대비 실제소득의 비율을 이용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실제소득은 파악하기 어려움

- 이하의 분석에서는 앞선 분석들과 마찬가지로 2018년 전(즉 2016년과 2017년)에 비해 2018년 이후(즉 2018년과 2019년) 신고소득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함
  - 종속변수는 앞서 정의한 신고소득률임
  - ‘2018년 이후’ 변수는 2016년과 2017년에 해당되는 관측치에는 0, 2018년과 2019년에 해당되는 관측치에는 1을 부여
  - 또한 사업장의 규모를 통제하기 위해 사업수입 또는 종합소득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통제변수로 사용함
  - 분석 결과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 적용 요건을 완화한 2018년 이후 신고소득률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회귀분석 모형의 설명력(R-squared)이 매우 약하여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은 신고소득률의 변화를 거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15> 요건 완화 전후 신고소득률 변화 1(전체 표본)

구분	(1)	(2)	(3)	(4)
2018년 이후	-0.807	-0.863	-0.813	-0.895
	(0.695)	(0.695)	(0.695)	(0.695)
log(사업수입)		4.114***		5.941***
		(1.081)		(1.108)
log(종합소득)			-1.568***	-1.862***
			(0.242)	(0.248)
상수	-1.595***	-82.88***	26.18***	-86.01***
	(0.481)	(21.37)	(4.317)	(21.37)
N	403,124	403,122	403,124	403,122
R-squared	0.0000	0.0005	0.0001	0.0005

주: \*\*\*, \*\*, \*는 통계적으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  
 자료: 국세청 제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각 연도별 변수를 따로 포함하여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음
  - 2016년 대비 2018년 신고소득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낮으며, 모형의 전체적인 설명력이 매우 약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표 IV-16> 요건 완화 전후 신고소득률 변화 2(전체 표본)

구분	(1)	(2)	(3)	(4)
2017년	-0.866 (0.961)	-0.965 (0.962)	-0.792 (0.961)	-0.922 (0.962)
2018년	-1.600* (0.967)	-1.721* (0.968)	-1.538 (0.967)	-1.700* (0.967)
2019년	-0.911 (0.983)	-1.009 (0.984)	-0.909 (0.983)	-1.049 (0.984)
로그(사업수입)		4.149*** (1.082)		5.971*** (1.109)
로그(종합소득)			-1.564*** (0.242)	-1.859*** (0.248)
상수	-1.152* (0.697)	-83.07*** (21.37)	26.51*** (4.341)	-86.18*** (21.38)
N	403,124	403,122	403,124	403,122
R-squared	0.0000	0.0005	0.0001	0.0005

주: \*\*\*, \*\*, \*는 통계적으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  
 자료: 국세청 제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제도 변화 직전 연도와 직후 연도인 2017년과 2018년을 비교하기 위해 <표 IV-17>은 두 연도만 포함한 분석의 결과를 보여줌
- 분석 결과 2017년 대비 2018년 신고소득률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17> 요건 완화 전후 신고소득률 변화 3(전체 표본)

구분	(1)	(2)	(3)	(4)
2018년	0.0656 (0.0697)	0.0269 (0.0695)	0.0652 (0.0697)	0.0279 (0.0695)
로그(사업수입)		3.690*** (0.169)		3.587*** (0.173)
로그(종합소득)			0.247*** (0.0336)	0.0954*** (0.0343)
상수	-2.375*** (0.0481)	-75.40*** (3.349)	-6.766*** (0.597)	-75.05*** (3.351)
N	202,549	202,548	202,549	202,548
R-squared	0.0000	0.0005	0.0000	0.0005

주: \*\*\*, \*\*, \*는 통계적으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  
 자료: 국세청 제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이상 패널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2018년 제도 적용 요건을 완화한 이후 제도 활용률과 신고소득률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
  -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전후 비교 분석에서는 제도 사용률, 신고소득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을 통제하지 못함
    - 특히 분석에 포함하지 않은 요인들로 인해 샘플에 포함된 사업장들이 영향을 받을 경우 본 공제제도 변화로 인한 종속변수의 변화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제도 변화의 효과를 식별(identification)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분석이 필요함

#### 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제외한 분석

- 본 제도와는 별도로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는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에 해당됨
  -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수입, 비용 등에 대한 신고내용과 증빙서류를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아야 함
    - 정부는 성실신고 확인에 지출한 비용의 60%를 세금에서 공제해 줌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다른 요건에 관계없이 본 공제제도 수혜대상에 속함
    -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2018년 이후 제도 요건 완화에 따른 자격 요건에 변화가 없음
    -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 기준금액은 <표 IV-18>과 같음

<표 IV-18>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

(단위: 억원)

업종	연간 수입금액(매출)		
	2011~2013년	2014~2017년	2018~2019년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30	20	15
제조업, 음식숙박업, 운수업, 출판방송업, 금융보험, 상품중개 등	15	10	7.5
부동산임대, 교육서비스, 보건, 사회복지, 예술스포츠,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7.5	5	5

자료: 권성오(2021), <표 4>, p. 18

- 2018년 제도 요건 완화가 제도 사용률, 신고소득률 등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제도 요건 완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를 제외하고 분석할 수 있음
  - 국세청 제공 데이터에 신고 유형 변수가 존재
  - 신고 유형이 ‘성실신고확인’인 사업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이 가능함

□ 본 절에서는 연도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표본에서 제외한 후 앞 절과 동일한 분석을 실시함

- <표 IV-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 이전 대비 2018년 이후 공제 사용률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19> 요건 완화 전후 제도 사용률 변화 1(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제외)

구분	(1)	(2)	(3)	(4)
2018년 이후	-1.58e-05	-1.17e-05	-1.40e-05	-1.11e-05
	(5.17e-05)	(5.17e-05)	(5.17e-05)	(5.17e-05)
log(사업수입)		0.000133***		0.000114***
		(2.75e-05)		(2.89e-05)
log(종합소득)			4.77e-05***	3.06e-05**
			(1.35e-05)	(1.42e-05)
상수	0.0319***	0.0295***	0.0311***	0.0293***
	(3.65e-05)	(0.000496)	(0.000219)	(0.000501)
N	176,243	176,241	176,243	176,241
R-squared	0.0011	0.0152	0.0110	0.0189

주: \*\*\*, \*\*, \*는 통계적으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  
 자료: 국세청 제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각 연도별 변수를 따로 포함하여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음
  - <표 IV-20>에서 연도별 계수는 분석에서 생략한 2016년 대비 효과의 크기임
  - 분석 결과 제도 요건 완화 이후 제도 사용률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20> 요건 완화 전후 제도 사용률 변화 2(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제외)

구분	(1)	(2)	(3)	(4)
2017년	1.77e-05 (7.30e-05)	1.61e-05 (7.30e-05)	1.51e-05 (7.30e-05)	1.46e-05 (7.30e-05)
2018년	4.27e-05 (7.32e-05)	4.18e-05 (7.32e-05)	4.07e-05 (7.32e-05)	4.07e-05 (7.32e-05)
2019년	-5.52e-05 (7.27e-05)	-4.79e-05 (7.27e-05)	-5.23e-05 (7.27e-05)	-4.70e-05 (7.27e-05)
로그(사업수입)		0.000132*** (2.75e-05)		0.000113*** (2.89e-05)
로그(종합소득)			4.73e-05*** (1.35e-05)	3.03e-05** (1.42e-05)
상수	0.0319*** (5.18e-05)	0.0295*** (0.000498)	0.0311*** (0.000222)	0.0293*** (0.000502)
N	176,243	176,241	176,243	176,241
R-squared	0.0000	0.0151	0.0108	0.0188

주: \*\*\*, \*\*, \*는 통계적으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  
 자료: 국세청 제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017년과 2018년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표 IV-21>은 두 연도만 포함한 분석의 결과를 보여줌
  - 분석 결과 2017년 대비 2018년 제도 사용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21> 요건 완화 전후 제도 사용률 변화 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제외)

구분	(1)	(2)	(3)	(4)
2018년	3.62e-05 (6.03e-05)	3.63e-05 (6.03e-05)	3.63e-05 (6.03e-05)	3.63e-05 (6.03e-05)
로그(사업수입)		0.000143*** (4.59e-05)		0.000122** (4.80e-05)
로그(종합소득)			4.95e-05** (2.15e-05)	3.25e-05 (2.25e-05)
상수	0.0332*** (4.22e-05)	0.0306*** (0.000828)	0.0324*** (0.000347)	0.0305*** (0.000835)
N	87,384	87,383	87,384	87,383
R-squared	0.0012	0.0171	0.0124	0.0209

주: \*\*\*, \*\*, \*는 통계적으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  
 자료: 국세청 제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018년 제도 적용 요건 완화가 신고소득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

- 앞 절과 마찬가지로 신고소득률은  $1 - \frac{\text{사업필요경비}}{\text{사업수입}}$  로 구함
- 분석 결과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 적용 요건을 완화한 2018년 이후 신고소득률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22> 요건 완화 전후 신고소득률 변화 1(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제외)

구분	(1)	(2)	(3)	(4)
2018년 이후	-1.396	-1.367	-1.439	-1.404
	(1.269)	(1.269)	(1.269)	(1.269)
log(사업수입)		4.848***		6.885***
		(1.692)		(1.728)
log(종합소득)			-1.790***	-2.077***
			(0.349)	(0.356)
상수	-4.233***	-92.16***	24.54***	-95.70***
	(0.895)	(30.71)	(5.683)	(30.71)
N	174,919	174,919	174,919	174,919
R-squared	0.0000	0.0014	0.0001	0.0010

주: \*\*\*, \*\*, \*는 통계적으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  
 자료: 국세청 제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각 연도별 변수를 따로 포함하여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음
  - 일부 분석에서 2016년 대비 2018년 신고소득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높지 않으며, 모형의 설명력이 매우 낮아 정확한 추정은 아닌 것으로 보임

<표 IV-23> 요건 완화 전후 신고소득률 변화 2(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제외)

구분	(1)	(2)	(3)	(4)
2017년	-1.545 (1.790)	-1.690 (1.791)	-1.427 (1.790)	-1.613 (1.791)
2018년	-2.927 (1.797)	-3.060* (1.797)	-2.829 (1.797)	-3.001* (1.797)
2019년	-1.441 (1.787)	-1.398 (1.787)	-1.504 (1.787)	-1.453 (1.787)
로그(사업수입)		4.947*** (1.694)		6.972*** (1.729)
로그(종합소득)			-1.782*** (0.349)	-2.071*** (0.357)
상수	-3.458*** (1.271)	-93.10*** (30.72)	25.12*** (5.745)	-96.57*** (30.73)
N	174,919	174,919	174,919	174,919
R-squared	0.0000	0.0014	0.0001	0.0010

주: \*\*\*, \*\*, \*는 통계적으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  
 자료: 국세청 제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017년과 2018년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표 IV-24>는 두 연도만 포함한 분석의 결과를 보여줌
  - 분석 결과 2017년 대비 2018년 신고소득률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24> 요건 완화 전후 신고소득률 변화 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제외)

구분	(1)	(2)	(3)	(4)
2018년	0.128 (0.127)	0.134 (0.127)	0.129 (0.127)	0.134 (0.127)
로그(사업수입)		4.566*** (0.263)		4.466*** (0.268)
로그(종합소득)			0.251*** (0.0478)	0.0914* (0.0486)
상수	-5.781*** (0.0891)	-88.69*** (4.772)	-9.832*** (0.775)	-88.36*** (4.776)
N	86,783	86,783	86,783	86,783
R-squared	0.0000	0.0015	0.0000	0.0015

주: \*\*\*, \*\*, \*는 통계적으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  
 자료: 국세청 제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이상 패널 회귀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2018년 제도 적용 요건을 완화한 이후 제도 활용률과 신고소득률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음

#### 4. 이중차분법 분석

- 본 절에서는 2018년 제도요건 완화로 인해 제도 수혜 가능 여부가 바뀌는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를 각각 처치군(treatment group)과 통제군(control group)으로 나누어 제도 변화 전후 각 집단의 종속변수 변화 정도를 비교하는 이중차분법을 활용
  - 2018년부터 제도 적용 요건이 완화되어 기존 복식부기 신고자에서 간편장부 신고자로 확대되었으며, 수입금액도 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의 9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되었고, 계속사업연도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되었음

##### 가. 간편장부 신고에 미친 영향

- 2018년 제도 적용 요건 완화로 인해 간편장부 이용자들도 다른 요건 충족 시 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이는 두 가지 별도의 경로를 통해 간편장부 사용률을 높일 수 있음
    - 간편장부 대상자이지만 본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있던 사업자들이 2018년 이후 간편장부 사용으로도 제도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 간편장부 이용률이 늘어날 수 있음
    - 간편장부 대상자이지만 간편장부를 사용하지 않던 추계 사용자(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들이 본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간편장부를 사용함
    - 하지만 기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사용해야 하므로, 2018년 제도 요건 완화로 인해 복식부기/간편장부 선택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를 처치군(treatment group),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자기조정 및 외부조정)를 통제군(control group)으로 나누어 제도 변화 전후 각 그룹의 복식부기/간편장부 사용 변화 정도를 비교하여 제도 요건 완화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음<sup>36)</sup>

36) <부표 3> 참고

- 국세청 제공 데이터에 존재하는 2019년 기장의무별 사업자 표본 수는 <표 IV-25>와 같음

<표 IV-25> 2019년 표본 복식부기의무자 및 간편장부대상자 수

(단위: 개)

신고 유형	표본 수
복식부기의무자	79,625
간편장부대상자	30,929

자료: 국세청 제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복식부기의무자의 신고 유형 분포는 <표 IV-26>과 같음<sup>37)</sup>

<표 IV-26> 연도별 복식부기의무자의 신고 유형

(단위: 개)

신고 유형	2016	2017	2018	2019
자기조정	1,463	1,350	1,422	1,492
외부조정	12,287	12,756	12,800	13,115
성실신고확인	46,730	49,637	64,731	64,359
간편장부	143	153	161	162
추계-기준경비율	407	408	384	406

자료: 국세청 제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간편장부대상자의 신고 유형 분포는 <표 IV-27>과 같음

<표 IV-27> 연도별 간편장부대상자의 신고 유형

(단위: 개)

신고 유형	2016	2017	2018	2019
자기조정	535	512	527	545
외부조정	1,990	2,096	2,241	2,297
성실신고확인	482	463	838	746
간편장부	11,660	11,643	11,956	12,377
추계-기준경비율	4,034	4,029	3,856	3,897
추계-단순경비율	9,900	9,945	9,904	10,911

자료: 국세청 제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37) 동일한 연도에 동일한 사업자식별번호를 가진 표본이 여러 개 존재하며, 이들의 신고 유형이 다른 경우 해당 사업자의 신고 유형을 정확히 알 수 없어 <표 IV-26>, <표 IV-27>에서 제외하였음

- 본 소절의 분석에서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처치군으로 설정하고, 2018년 제도 변경으로 인해 복식부기/간편장부 선택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집단들을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통제군으로 설정하여 이중차분법 분석을 실시함
  - 통제군1: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 통제군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통제군3: 자기조정 신고자
  - 통제군4: 외부조정 신고자
  - 다만 동일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연도별로 통제군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분석기간인 2016~2019년 동안 동일한 집단에 계속 포함된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 <표 IV-28>은 본 분석에 포함된 집단별 사업자 수를 보여줌

<표 IV-28> 집단별 관측치 수

(단위: 개)

집단	사업자 수
처치군	23,310
통제군1	27,575
통제군2	16,492
통제군3	728
통제군4	10,453

자료: 국세청 제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구체적으로 다음 회귀식을 분석함<sup>38)</sup>

$$y_{i,t} = \beta_0 + \beta_1 \times treat_i \times After_t + \beta_2 \times After_t + other\ controls + \epsilon_{i,t}$$

- 여기서 y는 종속변수, treat는 처치군은 1, 통제군은 0을 갖는 변수, After는 2018년은 1, 2017년은 0을 갖는 변수
- 다른 통제변수로는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사업수입과 종합소득금액을 사용
- 종속변수 y는 신고 유형이 간편장부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을 가짐
- 계수  $\beta_1$ 는 이중차분법으로 구한 제도 변화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38) 본 장의 모든 패널 분석은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을 사용한 분석이며, 본문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임의효과(random effect) 모형을 사용한 분석에서도 고정효과 모형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얻음

- <표 IV-29>는 전체 복식부기의무자(통제군1)를 통제군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제도 요건 완화가 간편장부 사용률에 미친 영향을 보여줌
  - 분석 결과 2018년 제도 요건 완화로 간편장부대상자의 간편장부 사용률이 2%p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의료비 등 공제를 활용하지 않는 간편장부대상자 중 40% 정도가 간편장부를 이용하므로, 동 제도로 인하여 간편장부 사용률이 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표 IV-29> 간편장부 사용률에 미친 영향(이중차분법, 통제집단: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구분	(1)	(2)	(3)	(4)
$Treat_i \times After_t$	0.0204***	0.0204***	0.0205***	0.0205***
	(0.00150)	(0.00149)	(0.00150)	(0.00149)
$After_t$	-0.000345	-0.000380	-0.000408	-0.000488
	(0.00101)	(0.00101)	(0.00101)	(0.00101)
로그(사업수입)		0.00484***		0.00637***
		(0.000541)		(0.000567)
로그(종합소득)			-0.00149***	-0.00234***
			(0.000247)	(0.000258)
상수	0.189***	0.0974***	0.215***	0.108***
	(0.000527)	(0.0103)	(0.00424)	(0.0104)
N	202,872	202,871	202,872	202,871
R-squared	0.1090	0.0000	0.1319	0.0044

주: \*\*\*, \*\*, \*는 통계적으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  
 자료: 국세청 제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표 IV-30>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통제군2)를 통제군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제도 요건 완화가 간편장부 사용률에 미친 영향을 보여줌
  - 분석 결과 2018년 제도 요건 완화로 영향을 받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간편장부 사용률이 2%p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IV-30> 간편장부 사용률에 미친 영향(이중차분법, 통제집단: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구분	(1)	(2)	(3)	(4)
$Treat_t \times After_t$	0.0200*** (0.00192)	0.0203*** (0.00192)	0.0200*** (0.00192)	0.0204*** (0.00192)
$After_t$	0 (0.00147)	-0.000298 (0.00147)	8.32e-05 (0.00147)	-0.000293 (0.00147)
로그(사업수입)		0.00532*** (0.000628)		0.00763*** (0.000668)
로그(종합소득)			-0.00230*** (0.000348)	-0.00371*** (0.000370)
상수	0.240*** (0.000668)	0.140*** (0.0118)	0.279*** (0.00596)	0.160*** (0.0120)
N	158,769	158,768	158,769	158,768
R-squared	0.0760	0.0023	0.1130	0.0065

주: \*\*\*, \*\*, \*는 통계적으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  
 자료: 국세청 제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표 IV-31>은 자기조정 신고자(통제군3)를 통제군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제도 요건 완화가 간편장부 사용률에 미친 영향을 보여줌
  - 분석 결과 2018년 제도 요건 완화로 영향을 받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간편장부 사용률이 2%p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IV-31> 간편장부 사용률에 미친 영향(이중차분법, 통제집단: 자기조정 신고자)

구분	(1)	(2)	(3)	(4)
$Treat_t \times After_t$	0.0201** (0.00916)	0.0200** (0.00915)	0.0201** (0.00916)	0.0199** (0.00915)
$After_t$	-0 (0.00902)	8.19e-05 (0.00901)	9.33e-05 (0.00901)	0.000269 (0.00901)
로그(사업수입)		0.00543*** (0.000819)		0.00785*** (0.000873)
로그(종합소득)			-0.00244*** (0.000463)	-0.00394*** (0.000493)
상수	0.401*** (0.00112)	0.307*** (0.0142)	0.438*** (0.00725)	0.326*** (0.0144)
N	95,145	95,144	95,145	95,144
R-squared	0.0021	0.0358	0.0007	0.0362

주: \*\*\*, \*\*, \*는 통계적으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  
 자료: 국세청 제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표 IV-32>는 외부조정 신고자(통제군4)를 통제군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제도 요건 완화가 간편장부 사용률에 미친 영향을 보여줌
  - 분석 결과 2018년 제도 요건 완화로 영향을 받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간편장부 사용률이 2%p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IV-32> 간편장부 사용률에 미친 영향(이중차분법, 통제집단: 외부조정 신고자)

구분	(1)	(2)	(3)	(4)
$Treat_i \times After_t$	0.0207***	0.0203***	0.0210***	0.0207***
	(0.00245)	(0.00245)	(0.00245)	(0.00245)
$After_t$	-0	0.000361	-0.000251	8.02e-05
	(0.00202)	(0.00202)	(0.00202)	(0.00202)
로그(사업수입)		0.00495***		0.00651***
		(0.000666)		(0.000698)
로그(종합소득)			-0.00157***	-0.00248***
			(0.000316)	(0.000331)
상수	0.290***	0.202***	0.315***	0.213***
	(0.000808)	(0.0119)	(0.00510)	(0.0120)
N	131,365	131,364	131,365	131,364
R-squared	0.0551	0.0250	0.0548	0.0281

주: \*\*\*, \*\*, \*는 통계적으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  
 자료: 국세청 제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2018년 제도 요건 완화로 인하여 간편장부대상자의 간편장부 사용률은 2%p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나. 제도 이용과 신고소득률에 미친 영향

- 복식부기/간편장부 이용 여부를 통해 2018년 제도 요건 완화가 본 조의 이용과 신고소득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음<sup>39)</sup>
  - 간편장부 사용자는 2017년 이전에는 본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었지만 2018년 이후 요건 완화로 인해 본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됨

39) 본 제도가 복식부기/간편장부 이용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가정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는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2018년 제도 변경으로 인한 요건 적용의 변화가 없음
- 따라서 2018년 제도 변경으로 인해 자격 요건의 변화가 생기는 간편장부 사용자를 처치군, 제도 변경에 따른 자격 요건의 변화가 없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를 통제군으로 설정할 수 있음<sup>40)</sup>

<표 IV-33> 2019년 신고 유형별 사업자 표본 수

(단위: 개)

신고 유형		표본 수
성실신고확인		65,176
복식부기 의무자	자기조정	2,039
	외부조정	15,500
간편장부		12,546
추계	기준경비율	4,305
	단순경비율	10,911

자료: 국세청 제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본 소절의 분석에서는 2018년 제도 변경으로 인해 자격 요건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집단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통제군으로 설정하여 이중차분법 분석을 실시함
  - 통제군1: 전체 복식부기의무자(통제군2+통제군3), 통제군2: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통제군3: 자기조정 및 외부조정 신고자<sup>41)</sup>
  - 다만 동일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연도별로 통제군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분석기간인 2016~2019년 동안 동일한 집단에 계속 포함된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 즉 2016~2019년까지 계속하여 간편장부를 사용한 사업자는 처치군, 해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사업자는 통제군1, 계속하여 복식부기 의무자인 사업자는 통제군2로 설정함
    - 통제군1과 통제군2에 속하는 사업자는 2016~2019년까지 계속하여 복식부기 사용 의무가 있었음

40) <부표 3> 참고

41) 자기조정 신고자와 외부조정 신고자를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음

- 처치군인 간편장부 사용자는 2017년까지는 본 제도 수혜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으나 제도 변경으로 인해 2018년부터 본 제도 수혜요건을 갖추게 됨
- <표 IV-34>는 본 분석에 포함된 집단별 표본 수와 기간별 본 공제제도 수혜 요건 충족 여부를 보여줌

<표 IV-34> 집단별 관측치 수 및 제도 수혜 요건 여부

(단위: 개)

구분	관측치 수	본 공제제도 수혜 요건 충족 여부	
		2016~2017년	2018~2019년
처치군	7,390	×	○
통제군1	16,492	○	○
통제군2	11,181	○	○

자료: 국세청 제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구체적으로 다음 회귀식을 분석함<sup>42)</sup>

$$y_{i,t} = \beta_0 + \beta_1 \times treat_i \times After_t + \beta_2 \times After_t + other\ controls + \epsilon_{i,t}$$

- 여기서 y는 종속변수, treat는 처치군은 1, 통제군은 0을 갖는 변수, After는 2018년은 1, 2017년은 0을 갖는 변수
  - 다른 통제변수로는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사업수입과 종합소득금액을 사용하였음
- 교차항의 계수인  $\beta_1$ 이 이중차분법으로 구한 제도 변화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 <표 IV-35>는 분석기간인 2016~2019년 전체 기간 복식부기 사용 의무가 있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즉 통제군1과 통제군2)를 모두 통제군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제도 요건 완화가 제도 사용률에 미친 영향을 보여줌
  - 분석 결과 제도 변화로 인해 본 제도의 수혜대상이 된 간편장부 신고자의 의료비 등 공제 사용률이 0.2%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간편장부 신고자 중 의료비 등 공제를 활용하는 비중이 1.6~1.9% 수준이므로, 요건 완화로 인하여 의료비 등 공제 사용률이 11~13%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42) 본 장의 모든 패널 분석은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을 사용한 분석이며, 본문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임의효과(random effect) 모형을 사용한 분석에서도 고정효과 모형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얻음

<표 IV-35> 제도 사용률에 미치는 영향(이중차분법, 통제집단: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구분	(1)	(2)	(3)	(4)
$Treat_i \times After_t$	0.00186*** (0.000314)	0.00186*** (0.000314)	0.00185*** (0.000314)	0.00185*** (0.000314)
$After_t$	-0.00192*** (0.000144)	-0.00193*** (0.000144)	-0.00191*** (0.000144)	-0.00191*** (0.000144)
로그(사업수입)		0.000215 (0.000173)		6.40e-06 (0.000176)
로그(종합소득)			0.000307*** (4.69e-05)	0.000307*** (4.77e-05)
상수	0.446*** (9.06e-05)	0.442*** (0.00342)	0.441*** (0.000837)	0.441*** (0.00343)
N	140,252	140,252	140,252	140,252
R-squared	0.0348	0.0036	0.0456	0.0478

주: \*\*\*, \*\*, \*는 통계적으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  
 자료: 국세청 제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표 IV-36>은 분석기간인 2016~2019년 전체 기간에 복식부기 사용 의무가 있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즉 통제군1과 통제군2)를 모두 통제군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제도 요건 완화가 신고소득률에 미친 영향을 보여줌
- 분석 결과 제도 요건 완화는 신고소득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36> 신고소득률에 미치는 영향(이중차분법, 통제집단: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구분	(1)	(2)	(3)	(4)
$Treat_i \times After_t$	-0.0127 (0.0266)	-0.00300 (0.0265)	-0.0131 (0.0266)	-0.00324 (0.0265)
$After_t$	-0.00281 (0.0122)	-0.00737 (0.0122)	-0.00195 (0.0122)	-0.00711 (0.0122)
로그(사업수입)		0.485*** (0.0247)		0.477*** (0.0254)
로그(종합소득)			0.0233*** (0.00400)	0.00502 (0.00410)
상수	0.187*** (0.00766)	-9.420*** (0.489)	-0.226*** (0.0713)	-9.363*** (0.491)
N	140,121	140,121	140,121	140,121
R-squared	0.0001	0.0019	0.0037	0.0020

주: \*\*\*, \*\*, \*는 통계적으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  
 자료: 국세청 제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표 IV-37>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통제군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제도 요건 완화가 제도 사용률에 미친 영향을 보여줌
  - 분석 결과 본 제도의 수혜대상이 된 간편장부 신고자의 제도 사용률이 0.3%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37> 제도 사용률에 미치는 영향  
(이중차분법, 통제집단: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구분	(1)	(2)	(3)	(4)
$Treat_i \times After_t$	0.00306***	0.00310***	0.00310***	0.00311***
	(0.000396)	(0.000397)	(0.000396)	(0.000397)
$After_t$	-0.00312***	-0.00316***	-0.00316***	-0.00316***
	(0.000221)	(0.000221)	(0.000220)	(0.000221)
로그(사업수입)		0.000726**		0.000131
		(0.000318)		(0.000324)
로그(종합소득)			0.000916***	0.000908***
			(9.71e-05)	(9.91e-05)
상수	0.646***	0.632***	0.630***	0.627***
	(0.000130)	(0.00636)	(0.00176)	(0.00638)
N	95,528	95,528	95,528	95,528
R-squared	0.1853	0.0403	0.1128	0.1518

주: \*\*\*, \*\*, \*는 통계적으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  
자료: 국세청 제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표 IV-38>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통제군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제도 요건 완화가 신고소득률에 미친 영향을 보여줌
  - 분석 결과 제도 요건 완화는 신고소득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38> 신고소득률에 미치는 영향**  
(이중차분법, 통제집단: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구분	(1)	(2)	(3)	(4)
$Treat_i \times After_t$	-0.0166	0.0123	-0.0153	0.0122
	(0.0333)	(0.0334)	(0.0333)	(0.0334)
$After_t$	0.00117	-0.0233	0.000288	-0.0231
	(0.0185)	(0.0187)	(0.0185)	(0.0187)
로그(사업수입)		0.431***		0.425***
		(0.0410)		(0.0421)
로그(종합소득)			0.0244***	0.00482
			(0.00825)	(0.00846)
상수	0.199***	-8.436***	-0.243	-8.413***
	(0.0109)	(0.822)	(0.150)	(0.822)
N	95,465	95,465	95,465	95,465
R-squared	0.0002	0.0015	0.0032	0.0016

주: \*\*\*, \*\*, \*는 통계적으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  
자료: 국세청 제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표 IV-39>는 자기조정 및 외부조정 신고자를 통제군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제도 요건 완화가 제도 사용률에 미친 영향을 보여줌
- 분석 결과 제도 요건 완화는 제도 사용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39> 제도 사용률에 미치는 영향**  
(이중차분법, 통제집단: 자기조정 및 외부조정 신고자)

구분	(1)	(2)	(3)	(4)
$Treat_i \times After_t$	8.89e-05	8.60e-05	8.56e-05	8.39e-05
	(0.000118)	(0.000118)	(0.000118)	(0.000118)
$After_t$	-0.000157**	-0.000153**	-0.000153**	-0.000151**
	(7.43e-05)	(7.44e-05)	(7.43e-05)	(7.44e-05)
로그(사업수입)		4.67e-05		3.14e-05
		(6.00e-05)		(6.10e-05)
로그(종합소득)			2.49e-05	2.34e-05
			(1.60e-05)	(1.63e-05)
상수	0.0119***	0.0111***	0.0115***	0.0110***
	(4.08e-05)	(0.00113)	(0.000267)	(0.00113)
N	74,284	74,284	74,284	74,284
R-squared	0.0008	0.0017	0.0012	0.0038

주: \*\*\*, \*\*, \*는 통계적으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  
자료: 국세청 제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표 IV-40>은 자기조정 및 외부조정 신고자를 통제군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제도 요건 완화가 신고소득률에 미친 영향을 보여줌
  - 분석 결과 제도 요건 완화는 신고소득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IV-40> 신고소득률에 미치는 영향  
(이중차분법, 통제집단: 자기조정 및 외부조정 신고자)

구분	(1)	(2)	(3)	(4)
$Treat_i \times After_t$	-0.00677	-0.0394	-0.00979	-0.0394
	(0.0418)	(0.0418)	(0.0418)	(0.0418)
$After_t$	-0.00870	0.0308	-0.00528	0.0308
	(0.0264)	(0.0264)	(0.0264)	(0.0264)
로그(사업수입)		0.652***		0.649***
		(0.0394)		(0.0405)
로그(종합소득)			0.0236***	0.00163
			(0.00574)	(0.00589)
상수	0.133***	-12.11***	-0.254***	-12.08***
	(0.0145)	(0.740)	(0.0955)	(0.745)
N	74,154	74,154	74,154	74,154
R-squared	0.0000	0.0049	0.0036	0.0050

주: \*\*\*, \*\*, \*는 통계적으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  
자료: 국세청 제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이상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통제군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포함될 경우에만 2018년 요건 완화가 제도 사용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떠한 분석에서도 신고소득률에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음



## V. 결론





## V.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
  - 동 제도는 본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의료비 등에 대한 공제를 성실신고를 하는 사업자에게 허용함
  
- 근로자와 성실사업자 간 세부담 형평성, 그리고 성실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사업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성실사업자에게는 의료비 등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함
  - 제도 발달에 따라 사업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이를 활용하여 성실신고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자에게는 본 조를 적용할 수 있음
    - ① 성실신고를 위한 납세환경을 갖추고(장부기장, 사업용계좌 사용 등) ② 세무신고를 성실히 수행한(국세 체납, 조세범 처벌 여부 등) 사업자
    -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현실적으로 몇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근로소득자와 유사한 수준의 세원투명성을 보이기는 어려움
  - 다만 평균적인 소득 종류별 과표양성화 격차만을 근거로 특정 납세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사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유사제도를 살펴보면, 제도 대상자를 소득 종류에 따라 차별하지 않음
  
- 동 제도의 타당성에 있어서의 쟁점은 성실사업자 판단 기준의 적절성인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함
  - 현행 제도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성실신고와 관련이 없는 외부적인 경영환경, 영업실적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적정 수입금액이 신고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세금계산서 등 교부·수취 의무, 사업용계좌 등 현행 제도의 다른 요건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함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하여 「조특법」 제122조의3 제1항 제4호(국세 체납, 조세범 처벌, 세금계산서·등의 발급 및 수령, 소득금액 누락)에 해당하는 요건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였어도 국세의 체납이나 조세범 처벌 사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성실사업자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의료비 등 공제가 성실신고 유도에 기여하는 정도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 사업자가 동 제도로 인한 절세금액이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보다 작다고 판단할 경우 요건 충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성실신고 유도효과도 발생하지 않음
  - 전체 산출세액 대비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과 그 외 성실사업자 요건 충족 여부는 각 요건과 관련된 다른 제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특히 수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의료비 등 공제보다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해질 수 있는 가산세와 수시 세무조사 등의 영향으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임
  - 현금영수증, 사업용계좌와 관련된 「소득세법」상 요건 충족 여부도 각 제도와 관련된 업종 및 수입금액에 따른 의무 부여와 제재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소규모 개인사업자인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의 경우 2018년 요건 완화로 인하여 간편장부 사용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비하여 전체 산출세액 대비 세액공제액 비중이 2배 이상 높아 경제적 유인에 반응할 가능성이 있음
  - 복식부기의무자를 통제군으로 이용하는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간편장부 대상자의 간편장부 사용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함<sup>43)</sup>

43) 간편장부 사용률이 2%p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의료비 등 공제를 활용하지 않는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 40% 정도가 간편장부를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5% 수준의 증가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제도 적용 요건 완화가 신고소득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음

## 참고문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권성오,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개인사업자의 납세행태」, 『재정포럼』, 제297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 권성오·이동규·전병욱, 『2019 조세특례 하반기 임의심층평가: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김재진·기은선·송은주·문예영,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사업용계좌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8.
- 안종석·강성훈·오중현, 『소득세 Tax Gap 추정과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 추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안종석·오중현, 『2017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교육비·의료비) 및 성실사업자 세액공제』,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txsi.hometax.go.kr>
-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
-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 부 록





## 부 록

### 〈부표 1〉 성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6서식(3)] <신설 2018. 3. 21.>

#### 성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항목	특이사항	비고
사업장 기본사항		
수 입 금 액	(예시) • 현금 수입금액 누락 여부	
유 형 자 산	(예시) • 해당 법인 이외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지 여부	
대 여 금	(예시) •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대여하는지 여부	
매 출 채 권 및 매 입 채 무	(예시) • 특수관계인 채권 지연회수 여부 • 원재료, 소모품 등 구매한 물품의 실물이 없는 매입채무 존재 여부	
선급금 및 선수 금	(예시) • 특별한 사유없이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 • 실제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	
지 출 증 명 서 류 합 계 표	(예시) •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 비치 여부 •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한 장부상 금액과 적격증빙금액 일치 여부 • 현금지출 항목 또는 적격증빙 없는 항목에 대한 업무무관 여부	
인 건 비	(예시) • 실제 근무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 해당 여부	
차 량 유 지 비	(예시) • 업무용 차량수를 고려할 때 과다계상된 주유비 지출 여부 • 사업규모·근무자 수에 비해 과다한 차량에 대한 주유비 지출 여부 • 법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 차량에 대한 주유비 지출 여부	
통 신 비	(예시) • 특수관계인 등의 명의로 지급한 통신비 해당 여부 • 업무와 관련 없는 통신기기에서 발생하는 통신비 해당 여부	
복 리 후 생 비	(예시) •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계상 여부 • 특수관계인의 개인용으로 지출한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계상 여부 • 접대 목적 또는 대표자 사적 사용한 상품권 해당 여부	
접 대 비	(예시) • 국내관광지 및 해외 여행 지출 경비 해당 여부 • 업무와 관련이 없는 유흥주점 지출 경비 해당 여부	
이 자 비 용	(예시) •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해 계상한 이자비용 여부 •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해 계상한 이자비용 여부	
감 가 상 각 비	(예시) •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여부	
건 물 관 리 비	(예시) • 특수관계인이 사용하는 건물의 관리비 계상 여부	
지 급 수 수 료	(예시) •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관련 수수료 여부	
성실신고 확인자 종합의견		

<부표 2> 성실신고 확인결과 사업자 확인사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6서식(4)] <신설 2018. 3. 21.>

성실신고 확인결과 사업자 확인사항

구분	확인내용	사업자확인 (예, 아니오)	비 고
수입금액 확인	매출채권의 장부상 잔액과 거래처 잔액이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신고 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비용은 없음을 확인합니다.		
	재고자산의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가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차이가 있는 경우 매출 및 재고누락, 사적사용 등 원인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계좌 외 대표자, 대주주, 기타 특수관계인, 종업원 등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장부에 누락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 누락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현금수입업종) 법인세 신고서상 현금 수입분에 대하여 누락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현금수입업종)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종업원의 봉사료는 실질에 맞게 구분기재하고 실제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전문인적용역) 협회 등에 신고한 수입 건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수입금액에 포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전문인적용역) 종료된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금을 장부에 누락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보건업종) 비보험 수입을 신고수입금액에 포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보건업종) 보관하고 있는 일일수입금액집계표, 현금출납부 및 매출원장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사업자확인은 “예” 또는 “아니오”로 기재하고, “아니오”인 경우에는 비교란에 차이금액 및 사유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금액 확인(업종별)은 신고인에 해당되는 업종에 대해서만 확인합니다.

위 확인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서명 또는 인)

<부표 3>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른 신고의무

업종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추계대상자	
		외부조정	자기조정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이상	6억원 이상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3억원 미만	6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제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옥탕업	7억 5천만원 이상	3억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1억 5천만원 미만	3,6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상	7,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7,500만원 미만	2,400만원 이상	2,400만원 미만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nts/cm/entnts/entntsView.do?mi=2230&entntsId=7669>, 검색일자: 2021. 8. 24.

<부표 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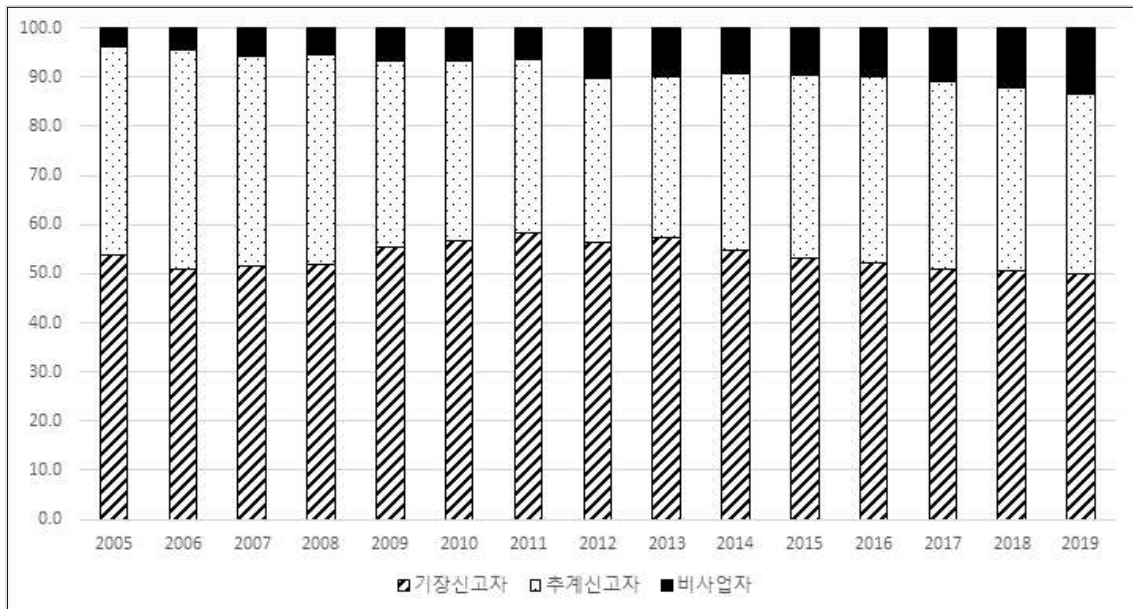
(단위: %)

연도	확정신고인원	기장신고자	추계신고자	비사업자
2005	100.0	54.0	42.4	3.7
2006	100.0	51.0	44.6	4.4
2007	100.0	51.6	42.8	5.7
2008	100.0	52.0	42.6	5.3
2009	100.0	55.5	37.9	6.6
2010	100.0	56.7	36.5	6.8
2011	100.0	58.3	35.2	6.4
2012	100.0	56.3	33.4	10.3
2013	100.0	57.4	32.5	10.1
2014	100.0	54.9	35.9	9.2
2015	100.0	53.2	37.4	9.4
2016	100.0	52.2	38.0	9.8
2017	100.0	50.8	38.2	11.0
2018	100.0	50.5	37.3	12.2
2019	100.0	49.9	36.6	13.5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3-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 현황’, 각 연도

[부도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 비중

(단위: %)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3-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 현황’, 각 연도

- 이하에서는 본문의 효과성 분석 중 2018년 제도요건 완화가 제도 사용률과 신고 소득률에 미친 영향을 이중차분법으로 추정한 내용에 대하여 통제군을 더욱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 본문에서는 2018년 제도변경으로 인해 자격 요건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집단을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통제군으로 설정하였는데, 부록에서는 통제군 중 복식부기 의무자(자기조정 및 외부조정 신고자)와 추계 신고자(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더욱 세분하여 이중차분법 분석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통제군 설정은 다음과 같음
    - 통제군1: 자기조정 신고자
    - 통제군2: 외부조정 신고자
    - 통제군3: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통제군4: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다만 동일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연도별로 통제군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분석기간인 2016~2019년 동안 동일한 집단에 계속 포함된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 나머지 분석 방법은 본문의 내용과 동일함

## 1. 제도 사용률에 미친 영향

- <부표 5>는 자기조정 신고자를 통제군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제도 요건 완화가 제도 사용률에 미친 영향을 보여줌
  - 분석 결과 제도변화로 인해 본 제도의 수혜대상이 될 경우 제도 사용률이 0.04%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그 크기가 작음

<부표 5> 제도 사용률에 미치는 영향(이중차분법, 통제집단: 자기조정 신고자)

구분	(1)	(2)	(3)	(4)
$Treat_i \times After_t$	-0.000411** (0.000187)	-0.000411** (0.000187)	-0.000411** (0.000187)	-0.000411** (0.000187)
$After_t$	0.000343* (0.000178)	0.000343* (0.000178)	0.000343* (0.000178)	0.000343* (0.000178)
로그(사업수입)		1.94e-06 (5.91e-05)		2.16e-06 (5.99e-05)
로그(종합소득)			-2.87e-07 (1.80e-05)	-4.00e-07 (1.83e-05)
상수	0.000431*** (3.77e-05)	0.000396 (0.00106)	0.000436 (0.000286)	0.000399 (0.00107)
N	32,472	32,472	32,472	32,472
R-squared	0.0020	0.0021	0.0020	0.0020

주: \*\*\*, \*\*, \*는 통계적으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  
 자료: 국세청 제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부표 6>은 외부조정 신고자를 통제군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제도 요건 완화가 제도 사용률에 미친 영향을 보여줌
- 분석 결과 제도 요건 완화는 제도 사용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부표 6> 제도 사용률에 미치는 영향(이중차분법, 통제집단: 외부조정 신고자)

구분	(1)	(2)	(3)	(4)
$Treat_i \times After_t$	0.000124 (0.000118)	0.000121 (0.000118)	0.000120 (0.000118)	0.000118 (0.000118)
$After_t$	-0.000191** (7.62e-05)	-0.000188** (7.63e-05)	-0.000187** (7.63e-05)	-0.000185** (7.64e-05)
로그(사업수입)		4.38e-05 (6.09e-05)		2.78e-05 (6.18e-05)
로그(종합소득)			2.52e-05 (1.62e-05)	2.39e-05 (1.64e-05)
상수	0.0122*** (4.12e-05)	0.0114*** (0.00114)	0.0118*** (0.000269)	0.0113*** (0.00114)
N	71,372	71,372	71,372	71,372
R-squared	0.0012	0.0007	0.0007	0.0025

주: \*\*\*, \*\*, \*는 통계적으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  
 자료: 국세청 제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 신고소득률에 미친 영향

- <부표 7>은 자기조정 신고자를 통제군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제도 요건 완화가 신고소득률에 미친 영향을 보여줌
- 분석 결과 제도 요건 완화는 신고소득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부표 7> 신고소득률에 미치는 영향(이중차분법, 통제집단: 자기조정 신고자)

구분	(1)	(2)	(3)	(4)
$Treat_i \times After_t$	-0.0182	-0.0334	-0.0168	-0.0335
	(0.159)	(0.159)	(0.159)	(0.159)
$After_t$	0.00275	0.0263	0.00178	0.0264
	(0.151)	(0.151)	(0.151)	(0.151)
로그(사업수입)		0.789***		0.790***
		(0.0953)		(0.0974)
로그(종합소득)			0.0254	-0.00115
			(0.0155)	(0.0158)
상수	0.0963***	-14.10***	-0.303	-14.11***
	(0.0321)	(1.716)	(0.246)	(1.719)
N	32,405	32,405	32,405	32,405
R-squared	0.0000	0.0111	0.0035	0.0111

주: \*\*\*, \*\*, \*는 통계적으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  
 자료: 국세청 제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부표 8>은 외부조정 신고자를 통제군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제도 요건 완화가 신고소득률에 미친 영향을 보여줌
- 분석 결과 제도 요건 완화는 신고소득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부표 8> 신고소득률에 미치는 영향(이중차분법, 통제집단: 외부조정 신고자)

구분	(1)	(2)	(3)	(4)
$Treat_i \times After_t$	-0.00597	-0.0408	-0.00931	-0.0409
	(0.0432)	(0.0432)	(0.0432)	(0.0432)
$After_t$	-0.00949	0.0324	-0.00576	0.0324
	(0.0278)	(0.0279)	(0.0278)	(0.0279)
로그(사업수입)		0.668***		0.666***
		(0.0408)		(0.0419)
로그(종합소득)			0.0237***	0.00110
			(0.00595)	(0.00611)
상수	0.131***	-12.42***	-0.258***	-12.40***
	(0.0151)	(0.766)	(0.0990)	(0.771)
N	71,247	71,247	71,247	71,247
R-squared	0.0000	0.0051	0.0036	0.0051

주: \*\*\*, \*\*, \*는 통계적으로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의미  
 자료: 국세청 제공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